

위원회 관련 기사모음집 V

2002년 6월 ~ 2002년 9월



▼ 허원근 사건 현장실지조사



대통령 측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회 관련 기사 모음집 V

2002년 6월 ~ 2002년 9월



▼ 허원근 사건 현장실지조사



대통령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자 레

1 법개정 및 조사기한 종료 관련보도

- 의문사규명위 활동시한 무기한 연장해야 (한겨례 2002. 7. 24)
“의문사위 시한 늘려라” (한겨례 2002. 7. 30)
의문사조회 흐지부지 되나 (한국일보 2002. 8. 7)
의문사규명위 활동연장 견의 (한겨례 2002. 8. 13)
의문사조회, 시한연장 견의 (중앙일보 2002. 8. 13)
“의문사규명위 활동 연장을” (동아일보 2002. 8. 13)
“의문사조회 활동기한 연장을” (세계일보 2002. 8. 13)
‘의문사 규명’은 계속돼야 한다 (세계일보 2002. 8. 14)
의문사 진상규명 ‘갈수록 궁지’ (문화일보 2002. 8. 16)
의문사조회 활동시한 연장될듯 (경향신문 2002. 8. 20)
의문사위 자문위원들, 기간연장 견의 (연합뉴스 2002. 8. 21)
“의문사 특검제로 풀자” (노동일보 2002. 8. 21)
“의문사위 시한연장·권한강화 검토” (한겨례 2002. 8. 21)
의문사조회 시한 연장 金대통령 검토 지시 (경향신문 2002. 8. 21)
의문사조회 존재 이유 (문화일보 2002. 8. 22)
[사설]의문사규명위 시한 연장해야 (대한매일 2002. 8. 22)
의문사조회 시한 연장해야 (동아일보 2002. 8. 22)
盧“반인륜범죄 시효 달리해야” (연합뉴스 2002. 8. 27)
53건 여전히 진행중 “갈길 아직먼데...” (한국일보 2002. 8. 30)
“의문 못푸는 의문사조회 조사연장·권한 강화를”
(경향신문 2002. 9. 3)
기간·권한 부족에 관련기관 만족 (경향신문 2002. 9. 3)
또 하나의 ‘의문사’...? (경향신문 2002. 9. 3)
‘의문사위’ 특별법 개정하라 (경향신문 2002. 9. 4)
“진실규명 막는 惡의 세력 있다” (대한매일 2002. 9. 4)
故최종길교수 간첩누명 벗어 (대한매일 2002. 9. 4)
“의문사조회 활동 연장하라” (시민의신문 2002. 9. 5)
의문사법 개정, 국회가 나서라 (한겨례 2002. 9. 6)
야만의 시대를 접으려면 (경향신문 2002. 9. 6)
‘억울한 죽음’ 다시 없게 진실 밝힐것 (문화일보 2002. 9. 7)
의문사규명위 강력한 권한부여를 (대한매일 2002. 9. 7)
의문사조회 조사활동 16일이후 중단될 듯 (경향신문 2002. 9. 9)
국가기관 비협조 진상규명 ‘막막’ (노동일보 2002. 9. 9)
역사적 진실 또 다시 사장되려나 (노동일보 2002. 9. 9)
‘역사 바로 세우기’ 계속돼야 (노동일보 2002. 9. 10)
‘억울한 죽음’ 또 덮을건가 (한겨례 2002. 9. 10)
진실밝혀 과거청산 매듭을 (한겨례 2002. 9. 11)

‘공소시효 배제’ 여론 확산 (대한매일 2002. 9. 10)
의문사위 활동연장 법안제출 (경향신문 2002. 9. 10)
의문사규명위 활동연장 법안 제출 (한겨례 2002. 9. 11)
의문사 진상규명과 한나라당 (한겨례 2002. 9. 11)
의문사조회 활동 연장법안 제출 (경향신문 2002. 9. 11)
역사의 진실캐기 멈출 수 없다 (한국일보 2002. 9. 11)
의문사규명 연장 무산위기 (한겨례 2002. 9. 12)
공소시효 배제 검토해야 (시민의신문 2002. 9. 12)
정치권, 의문사규명 묵살하나 (한겨례 2002. 9. 13)
정녕 유가족 마저... (경향신문 2002. 9. 13)
‘억울한 죽음’ 진실캐기 계속돼야 (세계일보 2002. 9. 13)
의문사조회 기한 연장할 듯 (한국일보 2002. 9. 13)
의문사진상규명 중단위기 (내일신문 2002. 9. 13)
의문사규명위 연장 끝내 무산 (한겨례 2002. 9. 14)
“의문사위 시한연장 범국민운동 벌일것” (한겨례 2002. 9. 14)
의문사조회 시한연장 무산 (중앙일보 2002. 9. 14)
일부기관 비협조 진실캐기 한계 (동아일보 2002. 9. 14)
의문사조회 활동연장 사실상 무산 (동아일보 2002. 9. 14)
‘억울한 죽음’ 역사에 묻하나 (경향신문 2002. 9. 14)
정치권 ‘소극’ 사실상 무산 (경향신문 2002. 9. 14)
의문사조회 활동연장 사실상 무산 (국민일보 2002. 9. 14)
의문사진상위 시한연장 무산위기 (대한매일 2002. 9. 14)
의문사법 제대로 개정하라 (한국일보 2002. 9. 15)
의문사 덮을건가 (한국일보 2002. 9. 15)
의문사진상규명위가 남긴 진기록(연합뉴스 2002. 9. 15)
진실을 왜 두려워하나 (한겨례 2002. 9. 16)
‘의문사’ 진상위, 국민이 되살려야 (한겨례 2002. 9. 16)
“과거청산은 이제 국민 모두의 몫” (중앙일보 2002. 9. 16)
未完으로 끝난 의문사 규명 (중앙일보 2002. 9. 16)
죽은 이의 명예도 소중 (동아일보 2002. 9. 16)
의문사규명위 법적활동 마감·해체 (국민일보 2002. 9. 16)
누가 진실이 밝혀지기를 두려워하는가 (노동일보 2002. 9. 16)
“의문사진상규명위 조사기한 연장을” (한겨례 2002. 9. 17)
의문사 30건 조사불능 (중앙일보 2002. 9. 17)
법개정땐 조사재개 가능 (동아일보 2002. 9. 17)
의원들, 의문사조회 ‘외면’ (경향신문 2002. 9. 17)
“독재정권 불법규명 성과, 진실 밝히는 것 국민의 몫”
(경향신문 2002. 9. 17)
의문사의 진실이 감추어지면 (국민일보 2002. 9. 17)

억울한 죽음 묻을 수 없다. (대한매일 2002. 9. 17)
의문사 규명위 '미완의 마감' (대한매일 2002. 9. 17)
의문사委 23개월 시한 종료 '억울한 죽음' 다시 미궁속으로
(세계일보 2002. 9. 17)
장준하사건등 30건 결국 '규명불능' (한국일보 2002. 9. 17)
의문사법 개정 국회의원 72명 찬성 (노동일보 2002. 9. 17)
의문사진상규명 이대로 멈출 수 없다 (노동일보 2002. 9. 17)
"인권위마저 손놓으면..." (한겨례 2002. 9. 18)
의문사 진상규명에 박수 지금이라도 활동 연장을
(한겨례 2002. 9. 18)
"亡者의 한 못풀어 시름만..." (문화일보 2002. 9. 18)
'억울한 죽음' 또 파묻는가 (내일신문 2002. 9. 18)
의문사 그냥 둘 수 없다(경향신문 2002. 9. 19)

2. 여원근 사건 관련 보도

총기살해를 자살로 위장하다니 (한겨례 2002. 8. 21)
만취 상관이 총기살해 군간부들 조직적 은폐
(한겨례 2002. 8. 21)
"군부대 자살" 아들 의문사 18년 싸워 '타살' 밝혔다
(중앙일보 2002. 8. 21)
"죄 고백하면 용서할겁니다" (동아일보 2002. 8. 21)
만취 하사관이 사병사살 軍서 18년간 자살로 은폐
(동아일보 2002. 8. 21)
"84년 술취한 상관 銃맞고 숨진 사병" (조선일보 2002. 8. 21)
"18년간 아들 명예회복 위해 싸워" (조선일보 2002. 8. 21)
한 병사의 억울한 죽음 (중앙일보 2002. 8. 21)
두 번 죽은 젊은 병사의 窮魂 (조선일보 2002. 8. 21)
"타살 사실이라면 軍의 수치" (경향신문 2002. 8. 21)
"18년간 장례도 안치렸어요" (경향신문 2002. 8. 21)
상관이 총기살해 조직적 은폐 (경향신문 2002. 8. 21)
"의문사 허원근씨 軍간부 타살 은폐" (국민일보 2002. 8. 21)
"상관이 총기 살해뒤 은폐" (대한매일 2002. 8. 21)
자살로 둔갑한 군 살해사건 (문화일보 2002. 8. 21)
'근무지 이탈 술판' 숨기려 장교·하사관이 자살 조작
(문화일보 2002. 8. 21)
"억울한 죽음 아직 많다" (문화일보 2002. 8. 21)
"상관이 총기살해 조직적 은폐" (문화일보 2002. 8. 21)
문화만평 (문화일보 2002. 8. 21)
전-盧씨의 의문사 규명 비협조 (세계일보 2002. 8. 21)
간부가 총기살해 조직적 은폐 (세계일보 2002. 8. 21)

아들 他殺 인정하면 모두 용서 (세계일보 2002. 8. 21)
술취한 상관이 총기살해 (한국일보 2002. 8. 21)
의문사 자살판정 타살로 확인 (노동일보 2002. 8. 21)
Military Found to Have Conducted Massive Cover-Up on 1984
Death (코리아타임즈 2002. 8. 21)
허일병의 억울한 죽음과 집단은폐 (연합뉴스 2002. 8. 21)
허원근일병 살해뒤 '알리바이 조작' 교육 (한겨례 2002. 8. 22)
기무사 또 자료공개 거부 (한겨례 2002. 8. 22)
"제2·제3 군의문사도 규명하자" (한겨례 2002. 8. 22)
"의문사 자료 공개하라" (중앙일보 2002. 8. 22)
상급부대 개입 가능성 (조선일보 2002. 8. 22)
상급부대 간부 개입 의혹 (국민일보 2002. 8. 22)
'허일병'연대·사단 간부 조사 (대한매일 2002. 8. 22)
허원근일병 국립묘지 안장 (문화일보 2002. 8. 22)
의문사자료 공개하라 (문화일보 2002. 8. 22)
의문사규명엔 시효가 없어야 (세계일보 2002. 8. 22)
간부들 술파티 숨기려 조작 (세계일보 2002. 8. 22)
의문사 규명에 협조하라 (한국일보 2002. 8. 22)
의문사 덮으려는 세력들 (한겨례 2002. 8. 23)
사단현병대 개입 의혹 (한겨례 2002. 8. 23)
허일병 타살 목격 소대원들 현병대 고문후 포상휴가
(중앙일보 2002. 8. 23)
허일병 他殺목격 사병8명 현병대 조사후 포상휴가
(동아일보 2002. 8. 23)
"허일병 他殺목격 사병들 현병대 조사 뒤 포상휴가"
(조선일보 2002. 8. 23)
"현병대서 가혹행위" (경향신문 2002. 8. 23)
"허일병 사망 목격사병 현병대서 가혹행위"
(국민일보 2002. 8. 23)
"목격자 軍조사때 가혹행위" (대한매일 2002. 8. 23)
총쓸 하사관은 대상서 제외 (한국일보 2002. 8. 23)
자살조작 목인 사병들 포상휴가 받아 (노동일보 2002. 8. 23)
국방부 특조단 은폐개입 의혹 (한국일보 2002. 8. 23)
허원근 일병 피살 은폐사건 당시 대대장 허위진술 의혹
(문화일보 2002. 8. 24)
허원근씨 자살조작 특조단도 은폐의혹 (세계일보 2002. 8. 24)
"허일병 사건" 국방부 2000년 조사 "중대장을 범인 의심했다"
(한국일보 2002. 8. 24)
High-Level Cover-Up of Soldier's Murder Suspected
(코리아타임즈 2002. 8. 24)
'어둠의 자식' 과 '신의 아들' (한겨례 2002. 8. 26)

"허일병 첫 총상때 생존" (동아일보 2002. 8. 26)
"허일병 첫 총격후 살아있었다" (국민일보 2002. 8. 26)
'허일병 사망' 현장조사. 의문사규명위, 새달 2일
(대한매일 2002. 8. 26)
"許일병 첫총격때 살아있었다" (세계일보 2002. 8. 26)
軍.명예회복을 위하여 (한국일보 2002. 8. 26)
"許일병 死因은 추가총격" (한국일보 2002. 8. 26)
허일병사건 의혹과 군 특별조사 (연합뉴스 2002. 8. 26)
허일병 자살조사·은폐 국방부 특별조사 (연합뉴스 2002. 8. 26)
한성동 국방부 합조단부단장 일문일답 (연합뉴스 2002. 8. 26)
'허일병 사망' 민·관 합동조사 (한겨례 2002. 8. 27)
허원근 일병 사망사건 특별조사위 구성키로
(중앙일보 2002. 8. 27)
허일병 사망규명 국방부 조사착수 (동아일보 2002. 8. 27)
'허일병 사건' 재조사 착수 (국민일보 2002. 8. 27)
인권범죄 공소시효 없애야 (대한매일 2002. 8. 27)
軍 '허일병 사망' 진상규명 착수 (대한매일 2002. 8. 27)
'許일병 내가 안됐다' (문화일보 2002. 8. 27)
'許일병 죽음' 진실 밝혀질까 (세계일보 2002. 8. 27)
軍, '許일병' 특별조사 (세계일보 2002. 8. 27)
국방부 許일병사건 특별조사 (한국일보 2002. 8. 27)
"인권 범죄 공소시효 없애야" (노동일보 2002. 8. 27)
국방부 허일병 사건 특별조사 착수 (노동일보 2002. 8. 27)
Military to Reinvestigate Army Private's Death
(코리아타임즈 2002. 8. 27)
"모든 군의문사 민·관 합동조사를" (한겨례 2002. 8. 28)
의문死 규명 시한연장 노력 (조선일보 2002. 8. 28)
"회식자리 싸움·총기사고 없었다" (조선일보 2002. 8. 28)
"조직적 은폐조작은 없었다." (조선일보 2002. 8. 28)
"許일병 내가 안됐다" (경향신문 2002. 8. 28)
허원근일병 母校서 명예졸업장 (세계일보 2002. 8. 28)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없애야 (한겨례 2002. 8. 29)
'허일병 사망' 물음표-재반박 논란 (한겨례 2002. 8. 29)
"의문사委서 진술 왜곡" (중앙일보 2002. 8. 29)
許일병 의문사, 진실은 뭔가 (중앙일보 2002. 8. 29)
'許일병 타살' 은폐조작 논란 (동아일보 2002. 8. 29)
햇갈리는 '許일병 미스터리' (조선일보 2002. 8. 29)
"許일병 세번째 銃傷전까지 생존" (조선일보 2002. 8. 29)
"중대장이 총성시간·실탄수 조작" (조선일보 2002. 8. 20)
구체적 내용은 공개안해 (조선일보 2002. 8. 29)
"허일병 타살 증거·증인 있다" (경향신문 2002. 8. 29)
"허일병 사망" 누구말이 맞나 (대한매일 2002. 8. 29)
허원근씨 사망 '의문부호' (세계일보 2002. 8. 29)
'許일병 사건논란 가열' (한국일보 2002. 8. 29)
Reversal of Soldiers' Testimony on 1984 Death Stirs Debate
(코리아타임즈 2002. 8. 29)
"許일병 자살 의심할 증거없어" (조선일보 2002. 8. 30)
"가슴 2곳 근접사격한 총상 흔적" (조선일보 2002. 8. 30)
軍사망사고 부실수사 양산 (한국일보 2002. 8. 30)
"허일병 사망현장 2~3명 있었다" (한겨례 2002. 9. 2)
허일병 사망 발표때 이미 연대장에 보고 (한겨례 2002. 9. 3)
두 일등병 '죽음의 진실' (중앙일보 2002. 9. 3)
"許일병 자살 증언 중대원들 입맞춰" (중앙일보 2002. 9. 3)
"허일병 사망조작 상급부대도 알았다" (동아일보 2002. 9. 3)
"당시 중대본부 하사, 병장이 許일병 自殺조작 사실 증언"
(조선일보 2002. 9. 3)
"허일병 새벽시간에 숨져" (국민일보 2002. 9. 3)
"대대급 대책회의서 은폐지시" (대한매일 2002. 9. 3)
"許일병' 조작사건 상급부대도 개입 (세계일보 2002. 9. 3)
"추가 2발도 용의자가 쌌다" (한국일보 2002. 9. 3)
"허일병 자살조작 정황증거 충분" (노동일보 2002. 9. 3)
'허일병 자살조작' 증언 추가 공개 (한겨례 2002. 9. 4)
许일병 사건 현장조사. 의문사委, 증언 추가공개
(중앙일보 2002. 9. 4)
허원근일병 사건 부대서 현장검증 (동아일보 2002. 9. 4)
허원근 일병 사망관련 의문사위 軍부대 현장조사
(조선일보 2002. 9. 4)
"권한 강화·활동기한 늘려야" (대한매일 2002. 9. 4)
许일병 자살조작 은폐 의문사委, 현장조사 (세계일보 2002. 9. 4)
허일병사건 현장조사 (한국일보 2002. 9. 4)
'살해후 자살조작' 최종결론 낼듯 (문화일보 2002. 9. 6)
"허일병사건 현병대가 허위진술 강요" (동아일보 2002. 9. 7)
"현병대서 현장 탄피숫자 조작" (경향신문 2002. 9. 7)
"현병대, 탄피개수 조작" (국민일보 2002. 9. 7)
"허일병 자살 현장 탄피개수 오락가락" (세계일보 2002. 9. 7)
"许일병 타살" 최종결론 (문화일보 2002. 9. 10)
"허원근 일병은 타살됐다" (노동일보 2002. 9. 11)
Commission Concludes Army Covered Up Murder of Soldier
(코리아타임즈 2002. 9. 11)
타살 뒤 은폐·조작 결론 (한겨례 2002. 9. 11)
'허일병 타살' 증언 두 사병 "우리 진실 누가 지켜주나"
(한겨례 2002. 9. 11)

군부대 사망사고 (중앙일보 2002. 9. 11)
‘쉬쉬’ 하는 軍... 의혹 키운다. (중앙일보 2002. 9. 11)
의문사위, 허원근 일병 ‘타살’ 최종 결론 (중앙일보 2002. 9. 11)
“허일병은 타살” 최종결론 (동아일보 2002. 9. 11)
“許일병 자살 아닌 타살, 軍 은폐조작은 확인못해”
(조선일보 2002. 9. 11)
‘허일병 타살후 은폐’ 결론 (경향신문 2002. 9. 11)
“허일병은 타살”최종 결론 (국민일보 2002. 9. 11)
허일병 추가 피격전 생존 (대한매일 2002. 9. 11)
“許일병 타살”결론 (한국일보 2002. 9. 11)
“2·3彈 누가 쐈나”입증이 핵심열쇠 (조선일보 2002. 9. 12)
허 일병 사망규명 끝나지 않았다. (대한매일 2002. 9. 12)
의문사 진상규명 가로막는 조선일보 (노동일보 2002. 9. 12)
허원근 일병을 또 사살하려는가 (시사저널 2002. 9. 12)
兵士의 죽음 (국민일보 2002. 9. 13)
대대장등 말맞추기 의혹 (대한매일 2002. 9. 24)

3. 녹화사업 사건 관련 보도

“녹화사업 피해자들, 진실을 말하라” (오마이뉴스 2002. 7. 11.)
“녹화사업”관련 5공핵심 출석요구 방침 (연합뉴스 2002. 7. 11)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녹화사업 전면조사”
(중앙일보 2002. 7. 11)
의문사위 전두환씨 소환키로 (경향신문 2002. 7. 12)
의문사위 “전두환씨 소환” (대한매일 2002. 7. 12)
전두환씨 출석 요구키로 (대한매일 2002. 7. 12)
“전두환씨등 5共핵심 소환” (한국일보 2002. 7. 12)
全斗煥씨등 출석요구 방침 (조선일보 2002. 7. 12)
‘녹화사업’을 용서할 수 있는가 (한겨례 2002. 7. 24)
‘녹화사업 통수권자 요청’ (한겨례 2002. 8. 2)
“녹화사업은 학생운동 탄압공작” (노동일보 2002. 8. 2)
전두환씨 ‘녹화사업’ 조사 (국민일보 2002. 8. 9)
운동권 학생 녹화사업 ‘그늘’ 밝혀질까 (국민일보 2002. 8. 9)
전前대통령 내일 출석 통보 (대한매일 2002. 8. 9)
의문사위, 전두환씨 조사 (세계일보 2002. 8. 9)
‘녹화사업’ 전두환씨에 의문사위 “내일출석”통보
(한국일보 2002. 8. 9)
“녹화사업 적법진행” 전 前대통령 출석거부
(국민일보 2002. 8. 10)
의문사위 소환에 전두환씨 불응의사 (한국일보 2002. 8. 10)
전두환 전 대통령 ‘녹화사업’ 조사 불응 (한겨례 2002. 8. 12)

출석거부 전두환씨 내주초 재출석 통보 (문화일보 2002. 8. 13)
의문사위, 전씨 2차출석 요구 (연합뉴스 2002. 8. 13)
“녹화사업, 국방-내무 합의각서 조사” (한겨례 2002. 8. 14)
전두환씨 출석 다시 요구 (조선일보 2002. 8. 14)
의문사위, 노태우前대통령 17일 소환 (대한매일 2002. 8. 14)
“강제징집 박정희때 시작” (한국일보 2002. 8. 14)
의문사위, 국방부 실지조사 실시 (연합뉴스 2002. 8. 14)
‘녹화사업’ 전·노씨 관여 국방부서 문건 발견 (경향신문 2002. 8. 15)
의문사위, 국방부 첫 현장조사 (국민일보 2002. 8. 15)
‘녹화사업’ 집단소송 (중앙일보 2002. 8. 16)
경향만평 (경향신문 2002. 8. 16)
전 전대통령 출석거부 항의집회 (연합뉴스 2002. 8. 16)
“전두환씨 녹화사업 규명 협조를” (한겨례 2002. 8. 17)
의문사위, ‘허원근 일병 총기 살해 당했다’ (KBS 2002. 8. 20)
노태우前대통령 소환 불응 의문사위, 재소환 여부 검토
(동아일보 2002. 8. 20)
노태우前대통령 소환불응 의문사위, 2차소환 검토
(대한매일 2002. 8. 20)
의문사위, 사병 총기사망사고 조직적 은폐 (KBS 2002. 8. 20)
의문사위 기무사 실지조사 (한겨례 2002. 8. 21)
의문사위, 기무사 실지조사 못해 (연합뉴스 2002. 8. 21)
全-盧-기무사의 의문사 버티기 (동아일보 2002. 8. 22)
軍녹화사업 현장조사 (조선일보 2002. 8. 22)
기무사·의문사 자료열람 거부 (경향신문 2002. 8. 22)
녹화사업·기무사조사 무산 (한국일보 2002. 8. 22)
전·노씨등 동행명령장 발부키로 (한겨례 2002. 8. 26)
全·盧씨 등에 동행명령장 (경향신문 2002. 8. 26)
“전두환-노태우씨에 동행명령장” (세계일보 2002. 8. 26)
녹화사업 자료 소각 (한겨례 2002. 8. 27)
“녹화사업 중요자료 소각” (한국일보 2002. 8. 27)
녹화사업 중요자료 소각 (한국일보 2002. 8. 27)
의문사위, 전 보안사과장 공개수배 (조선일보 2002. 8. 30)
前 보안사과장 공개수배 (경향신문 2002. 8. 31)
前보안사과장 공개수배 (세계일보 2002. 8. 31)
녹화사업 중요자료 소각 前 보안사과장 공개수배
(한국일보 2002. 8. 31)
Witness on Suspicious Deaths Wanted by Presidential
Commission (코리아타임즈 2002. 8. 31)
80년대 녹화사업 보안사 과장 수배 (한겨례 2002. 8. 31)
두 전직대통령 의문사위 동행명령 ‘불응’ (경향신문 2002. 9. 4)
전두환-노태우 前대통령 4일 동행명령 집행키로 의문사규명委

(동아일보 2002. 9. 2)
전-노前대통령 동행명령 의문사위 4일 집행키로
(세계일보 2002. 9. 2)
전직 대통령의 명예때문이라니 (한겨례 2002. 9. 4)
전·노씨 ‘녹화사업’ 동행명령 불응 (한겨례 2002. 9. 5)
前대통령들 동행명령 불응 (동아일보 2002. 9. 5)
全·盧씨 동행명령 불응 (경향신문 2002. 9. 5)
대한매일만평 (대한매일 2002. 9. 5)
의문사위 동행명령 전두환·노태우씨 불응
(한국일보 2002. 9. 5)
전두환·노태우 前대통령 의문사위 ‘동행명령’ 불응
(대한매일 2002. 9. 5)
무색한 동행명령장 (노동일보 2002. 9. 5)
두 전직대통령 동행명령 집행나선 의문사위
(시민의신문 2002. 9. 5)

4. 안희철 사건 관련 보도

‘의문사 한희철씨 자살 공권력 개입원인’ (연합뉴스 2002. 6. 26)
‘녹화사업’ 자살 한희철씨 의문사위 “軍가혹행위 탓”
(문화일보 2002. 6. 26)
녹화사업 관련 고문·자살 (한겨례 2002. 6. 27)
83년 서울대생 한희철씨 의문사 인정 (동아일보 2002. 6. 27)
“1983년 軍에서 자살한 한희철씨 공권력에 희생”
(조선일보 2002. 6. 27)
‘공권력에 의한 자살’ 첫 인정 (경향신문 2002. 6. 27)
‘공권력에 의한 자살’ 첫 인정 (내일신문 2002. 6. 27)
공권력항거 軍복무중 자살 (국민일보 2002. 6. 27)
“위법한 공권력 때문” 첫 인정 (노동일보 2002. 6. 27)
민주화 관련 의문사 인정 (대한매일 2002. 6. 27)
“위법한 공권력 행사가 원인” (세계일보 2002. 6. 27)
“공권력 위법 행사가 원인” (한국일보 2002. 6. 27)
“내 아들 죽음 민주화 초석 되었으면” (동아일보 2002. 6. 28)

5. 김준배 사건 관련보도

의문사위 과태료 부과 잘했다 (동아일보 2002. 6. 4)
의문사위검사에 첫 과태료 조사과정 동행거부 따라
(동아일보 2002. 6. 4)
의문사위, 현직검사에 첫 과태료 (동아일보 2002. 6. 4)
의문사위, 현직검사에 첫 과태료 (연합뉴스 2002. 6. 4)

한총련 150면 소환 논란 (한국일보 2002. 7. 11)
또 논란부른 의문사 규명위 (한국일보 2002. 7. 11)
동아·조선 국보법 개폐 권고에 '판죽'
(미디어오늘 2002. 7. 11)
국보법 사법 민주화 인정 논란 (내일신문 2002. 7. 12)
"의문사 결정, 상당히 합리적" (내일신문 2002. 7. 12)
"진실규명 아니라 의혹 증폭" (내일신문 2002. 7. 12)
"정윤기검사 끄락치공작 은폐공모" (연합뉴스 2002. 7. 16)
"검사가 끄락치공작 은폐공모" (YTN 2002. 7. 16)
"당시 지휘검사 사건은폐 시도" (동아일보 2002. 7. 17)
정윤기검사 끄락치 공작 은폐 공모 (무등일보 2002. 7. 17)
사상 자유롭게 경쟁하는 사회를 (기자협회보 2002. 7. 17)
'끄락치 공작 공모' 진실 밝혀야 (대한매일 2002. 7. 18)
규명해야 할 끄락치 '위장구속' (한겨례 2002. 7. 18)
한총련 합법화 미를 이유 없다 (한겨례 2002. 7. 20)
한총련 합법화 10만 서명운동 (노동일보 2002. 8. 9)
"공권력이 신뢰 받으려면 과거 청산 먼저" (시사뉴스 2002. 8. 20)
의문사 김준배씨 폭행 경찰 고발 (연합뉴스 2002. 8. 26)
김준배씨 폭행경찰 고발 (노동일보 2002. 8. 27)

6. 인혁당 사건 관련보도

바로잡습니다 (한국일보 2002. 7. 22)
'고문조작'과 국회가 해야 할 일 (한겨례 2002. 9. 13)
"인혁당사건, 중정이 조작" (한겨례 2002. 9. 13)
"인혁당 사건 中情서 조작" (중앙일보 2002. 9. 13)
74년 유신체제 유지 회생양 필요 (동아일보 2002. 9. 13)
"人革黨재건위 사건 중앙정보부가 조작" (동아일보 2002. 9. 13)
"인혁당재건위 사건 중앙정보부가 조작" (조선일보 2002. 9. 13)
"인혁당 재건위사건 중앙정보부 조작극" (경향신문 2002. 9. 13)
"74년 사형선고 피고 8명 20시간만에 집행" (국민일보 2002. 9. 13)
"인혁당 사건 中情서 조작" (국민일보 2002. 9. 13)
유신 '공작살인' 국가서 첫 인정 (대한매일 2002. 9. 13)
"뒤늦은 규명, 땅속 선배에 죄송" (대한매일 2002. 9. 13)
'인혁당 재건위' 시건 중앙정보부서 조작 (대한매일 2002. 9. 13)
"명예회복 다행...재심 청구" (대한매일 2002. 9. 13)
"특별한 입장없어 적극 협조할 것" (대한매일 2002. 9. 13)
"인혁당 진상규명 이제 시작, 조서만 봐도 中情 조작 확실"
(문화일보 2002. 9. 13)
'정부 전복세력' 조작 8명 사법살인 (문화일보 2002. 9. 13)

"인혁당사건은 中情조작극" (세계일보 2002. 9. 13)
유신 정치공작 실체 일부확인 (세계일보 2002. 9. 13)
"27년 맷한 응어리 풀었다" (세계일보 2002. 9. 13)
"인혁당 사건은 中情 조작극" (한국일보 2002. 9. 13)
인혁당 사건 중정 '조작극' (노동일보 2002. 9. 13)
인혁당 사건 진상규명 계기 삼자 (중앙일보 2002. 9. 14)
인혁당 사건 재심 통해 명예회복을 (동아일보 2002. 9. 14)
'人革黨 사건'의 진실을 찾아서 (조선일보 2002. 9. 14)
'인혁당 재건위사건' 새달 재심청구 (대한매일 2002. 9. 14)
고문조작-의문사 끝까지 밝혀야 (세계일보 2002. 9. 14)
[사설] 국가범죄로 판명된 '인혁당' 조작 (한국일보 2002. 9. 14)
인혁당사건 다시 법정 선다 (한국일보 2002. 7. 18)
고문후유증 앓다 사망 (조선일보 2002. 9. 15)
당시 대법판사 "소신대로 판결" (동아일보 2002. 9. 16)
"중앙정보부가 수사·재판 개입" (조선일보 2002. 9. 17)
당시 대법판사 "외압 없었다" (조선일보 2002. 9. 17)
전기고문...물고문...몽둥이...찜질...온몸에 피멍
(조선일보 2002. 9. 17)
"죽는사실도 모른채 끌려오던 人革黨 사형수들 모습 선헤"
(조선일보 2002. 9. 18)
人革黨재건위사건 등 83건 조사 (조선일보 2002. 9. 19)

7. 박창수 사건 관련보도

"한전중 전 노조위원장 박창수씨 타살 가능성" (한겨례 2002. 8. 2)
"투신자살 박창수씨 타살가능성" (동아일보 2002. 8. 2)
"의문사 박창수씨 타살가능성" (대한매일 2002. 8. 2)
"투신자살 아닌 타살 가능성" (세계일보 2002. 8. 2)
"투신자살 아닌 타살 정황" (한국일보 2002. 8. 2)
日법의학자 "박창수씨 타살가능성 높아" (연합뉴스 2002. 8. 2)
"의문의 죽음 진상을 밝혀라" (노동일보 2002. 8. 7)
박창수씨 추락사 안기부 개입흔적 (한겨례 2002. 9. 17)
박창수 의문사 '규명 불능' 처리 (노동일보 2002. 9. 16)

8. 경경식 사건 관련보도

87년 자살 발표 근로자 의문사위, 타살의혹 제기
(중앙일보 2002. 8. 17)
1987년 의문사 정경식씨 "무리하게 자살로 결론"
(한국일보 2002. 8. 17)

"87년 실종 정경식씨 숨진 뒤 시신 옮겨져"
(동아일보 2002. 8. 17)
"의문사 정경식씨 숨진 뒤 사체유기" (연합뉴스 2002. 8. 17)

9. 이덕인 사건 관련보도

"노점상 생존권 투쟁도 민주화 운동" (오마이뉴스 2002. 9. 10)
"장애인 노점상 이덕인씨 위법한 공권력으로 사망"
(문화일보 2002. 9. 11)

10. 육사 사건 관련보도

70년대 전향공작 관련자에 과태료(연합뉴스 2002. 6. 11)
의문사위 두번째 과태료부과 결정 (중앙일보 2002. 6. 11)
전향공작전담반 폭행으로 사망 (노동일보 2002. 6. 12)
중정, 장기수 전향공적 주도 (한겨례 2002. 8. 21)
"中情, 좌익 장기수 전향 공작" (문화일보 2002. 8. 21)
정기수 3명 전향강요 폭행 사망 (한겨례 2002. 8. 30)
"비전향 장기수 3명 고문으로 옥중사망"
(중앙일보 2002. 8. 30)
"장기수 3명 폭행 사망朴정권 전향공작 은폐"
(동아일보 2002. 8. 30)

"전향강요 폭행으로 사망" (국민일보 2002. 8. 30)
"전향거부 장기수 2명 타살" (한국일보 2002. 8. 30)
"사회안전법 폐지" 단식투쟁중 옥사 변형만·김용성씨
민주화운동 인정 (한겨례 2002. 9. 18)
비전향장기수 민주화운동 인정 (동아일보 2002. 9. 18)
"감호소 강제급식중 사망" (경향신문 2002. 9. 18)
의문사위 "민주화 인정" (대한매일 2002. 9. 18)
80년 악법저항 농성중 사망 보안감호 2명 의문사 인정
(세계일보 2002. 9. 18)
"사회안전법 철폐" 주장 獄死 변형만·김용성씨 민주화인정
(국민일보 2002. 9. 18)
의문사위, 민주화 운동 인정 (노동일보 2002. 9. 18)

11. 김상수 사건 관련보도

의문사委 "공권력에 희생" (문화일보 2002. 9. 9)
"경찰, 사망 원인 놓고 4차례 번복" (오마이뉴스 2002. 9. 9)
"위법한 공권력에 희생" (한겨례 2002. 9. 10)
71년 추락사 김창수씨 "공권력에 의한 사망"

(중앙일보 2002. 9. 10)
의문사委 "공권력에 의한 사망" (동아일보 2002. 9. 10)
공권력 개입 추정 (경향신문 2002. 9. 10)

의문사위 "공권력에 사망" (대한매일 2002. 9. 10)
여당·수사기관서 개입 (세계일보 2002. 9. 10)

"공권력에 희생" (한국일보 2002. 9. 10)
Truth Commission Says 1971 Death of Election Official Not Accidental (코리아타임즈 2002. 9. 10)

12. 김성수 사건 관련보도

의문사委 "타살가능성" (문화일보 2002. 8. 27)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발표 미흡" (연합뉴스 2002. 8. 27)
"의문사 김성수씨 타살 판단" (한겨례 2002. 8. 28)
"의문사 서울대생 타살 정황" (연합뉴스 2002. 8. 27)
86년 자살 발표 서울대생 의문사委, 타살의혹 제기
(중앙일보 2002. 8. 28)
의문사委 "타살가능성" (동아일보 2002. 8. 28)
의문사委 "타살 가능성" (경향신문 2002. 8. 28)
의문사委 "타살 추정" (대한매일 2002. 8. 28)
의문사위 "타살 가능성" (세계일보 2002. 8. 28)
의문사委 "타살 가능성" (한국일보 2002. 8. 28)
의문사 민·관합동 재조사하라 (세계일보 2002. 8. 29)

13. 삼성교육대(현명백사건) 사건 관련보도

의문사규명위 삼청교육대 조사 (동아일보 2002. 7. 31)
"삼청교육대 진상규명 5共녹화사업 조사병행"
(세계일보 2002. 7. 31)
"전·전대통령 조사시 삼청교육대도 조사" (연합뉴스 2002. 7. 31)
삼청교육 저항중 사망 전정배씨 '민주화' 인정
(한겨례 2002. 9. 17)
'삼청교육' 사망 등 9건 규명위, 의문사 인정
(조선일보 2002. 9. 17)

14. 장준아 사건 관련보도

중정, 장준하 '위해분자' 분류 감시 (내일신문 2002. 8. 8)
"중정, 장준하 '위해분자' 분류 밀착감시" (연합뉴스 2002. 8. 8)
장준하씨 '위해분자' 분류 밀착감시 (동아일보 2002. 8. 9)
장준하 '위해분자' 분류 밀착감시 (노동일보 2002. 8. 9)

“동행자는 中情 정보원” (한국일보 2002. 9. 12)

장준하선생 死因 못밝혀 (동아일보 2002. 9. 17)

장준하씨 사망의혹 의문사위도 못풀어 (한겨레 2002. 9. 23)

15. 국정원 실지조사 관련 보도

의문사위 ‘국정원 방문 첫 실지조사’ (연합뉴스 2002. 8. 1)

의문사규명위 “국정원 방문조사” (동아일보 2002. 8. 2)

의문사위 국정원등 방문조사 (조선일보 2002. 8. 2)

의문사위 국정원 방문조사 (경향신문 2002. 8. 2)

의문사위 “국정원등 현장조사” (국민일보 2002. 8. 2)

의문사진상규명위 국정원 현장조사 무산 (동아일보 2002. 8. 8)

의문사위, 국정원 조사 무산 (국민일보 2002. 8. 8)

의문사위 국정원 조사 무산 (대한매일 2002. 8. 8)

의문사위, 국정원 방문조사 실패 (한국일보 2002. 8. 8)

국정원 ‘의문사규명’ 실지조사 거부 (노동일보 2002. 8. 8)

16. 문용섭 사건 관련보도

의문사위, 현직검사에 동행명령장 발부 (동아일보 2002. 8. 8)

의문사위, 현직검사에 동행명령장 발부 (한겨레 2002. 8. 8)

수사지휘 검사에 동행명령장 (한겨레 2002. 8. 9)

의문사규명위, 검사에 동행명령장 (동아일보 2002. 8. 9)

의문사위, 현직검사에 동행명령장 (경향신문 2002. 8. 9)

의문사위, 검사에 동행명령장 (한국일보 2002. 8. 9)

의문사위 현직 검사에 또 동행명령 (노동일보 2002. 8. 9)

17. 기타 위원회 관련 보도

국과수 엉터리 감정 (한국일보 2002. 6. 8)

‘분명한 타살이었다’ (시사저널 2002. 6. 13)

‘벽에 갇힌’ 의문사규명위 (한겨레 2002. 7. 9)

정권유지에 국가기관 총동원 입장 (내일신문 2002. 7. 22)

‘과거’ 인적·물적 기득권 청산해야 화해가능 (한겨레 2002. 7. 23)

92년 탁은주씨 사망사건 첫 ‘진상규명 불능’ 결정

(문화일보 2002. 8. 6)

여대생 의문사 ‘진상규명 불능’ 첫 결정 (동아일보 2002. 8. 6)

여대생 의문사 ‘진상규명 불능’ 첫 결정 (연합뉴스 2002. 8. 6)

의문사위 ‘진상규명 불능’ 결정 (경향신문 2002. 8. 7)

91년사망 탁은주씨 사건 첫 ‘진상규명 불능’ 결정

(한국일보 2002. 8. 7)

졸속 출범 위원회들 위상 ‘흔들’ (중앙일보 2002. 8. 16)

법원 “여권 발급 일방 거부통지 잘못” (한겨레 2002. 8. 31)

‘의문사위’ 규명의 어려움 (조선일보 2002. 9. 5)

너무 반가운 의문사위 관련기사 (경향신문 2002. 9. 5)

“軍기관 관련” 의혹불구 영구미제 빠질 가능성

(경향신문 2002. 9. 6)

‘92년사망 박태순씨 기무사서 내사’ (한국일보 2002. 9. 6)

“기무사 알고 있었다” (대한매일 2002. 9. 6)

이철규씨 조선대 교지편집장 89년 의문사. 박창수씨 한진重

노조위원장 91년에 변사 (경향신문 2002. 9. 14)

89년 변사 조선大 이철규씨 의문사위 “타살가능성”

(동아일보 2002. 9. 14)

유족·시민단체 거센분노 (경향신문 2002. 9. 14)

“폭행당한 뒤 의사 가능성” (문화일보 2002. 9. 14)

71년 DJ교통사고 베일벗나 (한국일보 2002. 9. 16)

“DJ 71년 輸禍 구 공화후보가 배후 공화후보가 배후”

(대한매일 2002. 9. 16)

71년 DJ교통사고 의문풀리나 (세계일보 2002. 9. 16)

‘DJ교통사고’ 베일벗나 (한국일보 2002. 9. 16)

國軍을 상대로 한 의문사위원회의 인민재판식 엉터리 조사를

규탄한다! (조선일보 광고 2002. 9. 17)

의문사위 “진상규명 불능” 결정 (대한매일 2002. 9. 17)

‘진상규명 불능’ 결정 (국민일보 2002. 9. 17)

전정배씨 사망등 19건 ‘의문사’ 인정, 장준하씨 사건등 30건은

‘규명불능’ (경향신문 2002. 9. 17)

70~80년대 민주화운동 지원 해외인사 60여명 새달 내한

(대한매일 2002. 9. 25)

“27년 옥살이 끝낸 느낌” (대한매일 2002. 9. 25)

軍 의문사수상에 민간 참여를 (문화일보 2002. 9. 25)

의문사규명위 부활시켜야 (문화일보 2002. 9. 25)

불신받는 군의문사 수사 해결책 없나 (한겨레 2002. 9. 26)

조선일보는 진실을 보도하라 (노동일보 2002. 9. 26)

“조선일보는 의문사 왜곡보도 중단하라” (노동일보 2002. 9. 26)

軍 의문사 신중접근 필요 (대한매일 2002. 9. 27)

군내사망 수사 구조적 문제점 (세계일보 2002. 9. 27)

국군의 명예-사기 북돋아 주라 (동아일보 2002. 9. 30)

다시 잊혀지는 의문사 (노동일보 2002. 9. 30)

‘인혁당’ 관련 강제추방 美 조지 오글목사 방한

(대한매일 2002. 9. 30)

의문사 규명 중단 안된다 (한국일보 2002. 9. 30)

‘의문사위’ 재구성 접근 (연합뉴스 2002. 9. 30)

법개정 및 조사기한 종료 관련보도

의문사규명위 활동시한 무기한 연장해야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존속시한이 오는 9월16일이라는 보도를 보고 안타까워 글을 적는다. 한 역사학자는 “진실은 역사자체가 갖고 있는 음모적인 힘때문에 밝혀지기가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인권이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는 시대, 그것도 국민의 정부라고 하는 이 시대에 과거 군사 독재 권력자들이 저지른 각종 반인륜적 사건들의 진상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시한을 무기한 연장해 끝까지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과거 제때 친일·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하지 못했던, 실패한 역사를 다시 반복할 것인가?

그리고 이번 기회에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는 특별입법도 조속히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임정환/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의문사위 시한 늘려라”

60건 진상규명 못한채 9월16일 활동종결 직면
유가족·사회단체, 권한강화등 입법청원 움직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85건의 의문사 접수사건들 중 60건의 진상을 아직 규명하지 못한 채 법정시한인 9월16일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이자, 유가족과 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위원회의 시한연장과 권한강화를 위한 입법청원 움직임이 일고 있다.

허영춘 유가족협의회 회장은 지난 25일 의문사규명위원회들과의 간담회에서 “의문사위원회가 과거 반민특위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며 “사회단체들과 연대해 법개정을 모색하겠다”고 밝히고, 이를 위원회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한상범 위원장은 “정

부나 정치권이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위원회의 법정시한을 9개월로 한정했다. 2000년 10월 출범한 의문사위원회는 2001년 7월과 2002년 3월 두 차례의 법개정을 통해 기한을 연장해 왔으나, 지난 3월 2차 법개정 당시, 국회 법사위원회 위원들이 의문사위원회의 시한연장을 더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내부 합의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시한종료로 인해 ‘진상규명 불능’으로 종결될 우려가 있는 의문사는 장준하 사건 등 모두 23건이라고 위원회 쪽은 말했다.

다”며 “관계 사회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위원회의 권한강화와 시한연장을 정부쪽에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0년 1월 제정된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은 위원회의 법정시한을 9개월로 한정했다. 2000년 10월 출범한 의문사위원회는 2001년 7월과 2002년 3월 두 차례의 법개정을 통해 기한을 연장해 왔으나, 지난 3월 2차 법개정 당시, 국회 법사위원회 위원들이 의문사위원회의 시한연장을 더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내부 합의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시한종료로 인해 ‘진상규명 불능’으로 종결될 우려가 있는 의문사는 장준하 사건 등 모두 23건이라고 위원회 쪽은 말했다.

김훈 기자 hoonk@hani.co.kr

미제사건 많은데 시한 앞으로 한달여

의문사위 흐지부지 되나

83건중 24건만 조사 끝내

권한강화등 法개정 없으면
무더기 ‘규명불가’ 우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종료시한(9월16일)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권한 강화와 조사 연속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이 없는 한 조사 사건들의 무더기 ‘진상규명불가’ 판정이 불가피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위원회 안팎에서 커져 가고 있다.

의문사위 관계자는 6일 “녹화사업 실체 규명을 위한 전斗환(全斗煥)씨 소환, 7일 국정원 실지조사 등을 앞두고 있지만 강제조사 권한 없이 한 달 만에 모든 사건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실제 83건의 사건 중 현재 조사가 끝난 사건은 24건에 불과하다. 의문사 빅5로 통하는 최종길(崔鍾吉) 장

■ 의문사위원회 조사 현황

(단위: 건, 전체 진정·직권 사건: 83건)

의문사 판정	5
기각 판정	17
진정인 취하	1
진상규명 불가 판정	1
조사 진행 중인 사건	59

준하(張俊河) 이내침(李來昌·중앙대 안성캠퍼스 총학생회장) 이철규(李哲揆·조선대 교지편집위원장) 박창수(朴昌洙·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사건 중 결과가 발표된 것은 최종길 사건 뿐이다.

특히 국정원은 중앙정보부의 장준하 보고문건 등 위원회측이 요청한 주요자료에 대해 “존안 자료가 없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어

갈길 바쁜 위원회의 발목을 잡고 있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이은경(李銀敬) 사무처장은 “강제소환, 위증죄 적용 등 권한 강화만 있었어도 2년의 활동기간 동안 충분히 진실을 밝힐 수 있었을 것”이라며 “한 시성보다 권한 미비가 더 큰 한계인 만큼 8월 중 특별법 3차 개정안을 재발의해 법개정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6일 기자회견을 갖고 “박창수 위원장이 타살됐다는 김정서(본보 2일자 31면)가 나왔지만 국정원이 안기부 개입 여부에 대한 조사협조를 꺼리고 있는 등 노동자 의문사 사건 상당수가 다시 역사 속에 묻힐 위기에 처했다”며 “7일 국정원 행의 집회와 공청회 개최, 서명운동을 통해 특별법 개정 운동을 본격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의문사규명위 활동연장 건의

한위원장, 청와대에 의견서

위증처벌등 권한강화 촉구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한상범 위원장이 위원회의 기한 연장과 조사권한 강화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지난 7일 '의문사 진상규명에 대한 처리상황과 전망-법 정조사시한 만료를 앞둔 의견'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김 대통령에게 보내 "현행법대로 9월 16일 조사활동을 마칠 경우 일부 사건을 빼고는

조사를 완료하지 못하게 된다"며 "의문사 사건은 권위주의 정권 시기에 가장 비참하게 희생된 사람들의 사망사건이기 때문에 유관기관에서 적절한 대응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를 위해 의문사특별법의 시한 제약 폐지, 위원회 조사권한 보강, 증인·참고인 등의 위증처벌 규정 설치 등을 요구했다.

또 국가 공권력을 불법적인 정치 목적으로 악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해 범법자를 처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문사 희생자 의 민주화운동 여부가 확인되지 못

하더라도 공권력의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청 구권을 인정해주어야 한다고 제안 했다.

2000년 10월 9개월의 한시적 기구로 출범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7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6개월씩 기한을 연장했으나, 위원회의 한시성과 국정원·기무사·국방부 등 관계기관의 비협조로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유가족과 사회단체들은 위원회의 조사권한 강화와 시한 연장을 위한 입법청원을 준비 중이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의문사委, 시한연장 건의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한상범 위원장이 다음달 16일로 끝나는 활동시한을 연장해줄 것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명위 관계자는 12일 '韓위원장이 지난 7일 김대중 대통령 앞으로 발송한 의견서에서 '현 상황에선 일부 사건을 빼고는 조사를 완료할 수 없는 만큼 활동시한을 연장하고 조사권한을 강화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000년 10월 9개월의 한시적 기구로 출범한 규명위는 지난해 7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6개월씩 활동 시한을 연장했으나 조사대상 사건 83 건 중 24건에 대해서만 조사를 완료한 상태다.

"의문사규명위 활동 연장을"

韓相範위원장 의견서 제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한상범(韓相範) 위원장이 위원회의 기한 연장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보냈다. 12일 진상 규명위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7일 김 대통령 앞으로 보낸 의견서에서 "현행법대로 9월 16일 조사 활동을 마칠 경우 일부 사건을 빼고는 조사를 완료하지 못하게 된다"며 "의문사특별법의 시한 제약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의문사委 활동기한 연장을"

김대통령에 건의- 권한강화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한상범 위원장이 위원회의 기한 연장과 조사권한 강화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지난 7일 '의문사 진상규명에 대한 처리상황과 전망-법 정조사시한 만료를 앞둔 의견'이라는 개인 자격의 건의문을 통해 "현행법대로 9월 16일 조사활동을 마칠 경우 일부 사건을 빼고는 조사를 완료하지 못한 게 된다"는 의견을 김 대통령에게 전했다.

한 위원장은 이와 함께 의문사특별법의 시한 제약 폐지, 위원회 조사권한 강화, 증인·참고인 등의 위증처벌 규정 설치 등도 요구했다.

2000년 10월에 9개월의 한시적 기구로 출범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7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6개월씩 기한을 연장하였으나 위원회의 한시성과 국정원, 기무사, 국방부 등 관계기관의 비협조로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황현택기자

larchide@sgt.co.kr

‘의문사 규명’은 계속돼야 한다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한상범 위원장이 법정조사시한 만료를 앞두고 활동기한 연장과 조사권한 강화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김대중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현행법 대로 9월 16일 조사를 중단하면 대부분의 의문사사건이 영구 ‘미제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이전의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한 위원장은 이를 위해 의문사특별법의 시한제약 폐지, 위원회의 조사권한 보강, 증인·참고인 등의 위증처벌 규정 설치 등을 요구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는 ‘의문사 사건은 권위주의 정권 시기에 가장 비참하게 희생된 사람들의 사망사건’이므로 위원회 활동을 연장하는 유관기관에서 맡든 끝장을 보아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 의문사사건은 군사독재정권이 저지른 일종의 살인사건이

다. 희생된 수많은 피살자들과 유족들의 한(恨)은 한시적인 조사기구의 해체와 함께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대통령 직속기구를 아름달짜리 한시기구로 발족시킨 것도 잘못이지만 국정원 기무사 국방부 등 관계기관의 비협조가 뻔히 예상되는데도 이를 방지하거나 위증을 처벌할 아무런 법적 장치가 없다는 것도 문제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할 때 많은 국민은 오랜 세월 침묵속에 묻혀있던 억울한 의문사 사건들을 속시원히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했다. 임기말이라 해서 국가공권력을 불법적 정치목적으로 악용한 해묵은 살인사건들을 이 상태로 덮고 끌낼 수는 없다. 공권력에 의한 살인은 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소시효 없이 처벌하고 초정권적으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진상규명을 계속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나라에 정의(正義)란 없다.

의문사 진상규명 ‘갈수록 궁지’

강제조사권 없어 고위층 잇단 비협조

시간·자료 부족 83건 중 24건만 종결

‘진실과 화해’를 표방하며 출범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가 전직 대통령과 검사 등 관리자와 국정원 등 기관들의 잇따른 협조 거부로 난항을 겪고 있다. 더구나 조사시한(9월 16일)이 한달밖에 남지 않아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를 의문사 진상규명 작업이 무위로 끝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의문사위는 1987년 대우증공업 재직 중 실종된 9개월여만에 이산에서 나무에 목매달아 숨진 채 발견된 정경식씨 사건과 관련, 당시 사건을 자살로 처리한 최광태(현 대구고검 소속)

이처럼 각 기관과 관련자들의 비협조가 계속됨으로써 의문사 진상규명 작업도 벽에 부딪쳤다. 현재까지 의문사위에서 접수한 83건의 사건 중 24건만이 종결됐다. 의문사위 활동성사무국장은 “시간과 자료부족으로 인해 23 건은 보강조사나 유족의 의견을 반영한 추가조사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유족회 등은 “강제조사권이 없는 의문사위의 태생적 한계가 노출된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상 의문사위는 2차례의 출석요구와 동행명령장 발부, 실지조사 등의 권한이 있지만 이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만 부과할 뿐 강제조사할 권한은 없다.

/오남석기자 greenlee@munhwa.co.kr

의문사위 활동시한 연장될 듯

김대중 대통령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시한 연장과 조사권 강화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문사위 한상범 위원장은 20일 “지난 7일 김대통령에게 보낸 ‘활동시한 연장’ 의견서에 대해 대통령이 최근 시민사회비서관에게 지시, 실태파악에 나선 상황”이라며 “의문사위의 시한 연장과 조사권 강화는 국회에서 결정할 일이지만 비교적 긍정적 결론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도 이날 서울 송현클럽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피진정기관들의 비협조와 위원회의 권한 부족으로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의문사위의 활동시한 연장과 조사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의문사위법 3차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의문사위 위원장을 특별검사로 하고 상임위원을 특별검사보로 구성해 의문사위가 사법경찰권을 갖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8월 중 한나라당 일부 의원을 통해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배장수기자〉

의문사위 자문위원들, 기간연장 건의

(서울=연합뉴스) 황희경기자 = 박형규 민주화운동진상기념사업회 이사장 등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자문위원 9명은 21일 오전 의문사위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위원회의 조사기간 연장과 권한 강화,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등을 대통령과 여야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박형규이사장은 "조사기한의 연장과 조사권한의 강화를 위한 법개정이 필요하고 시민단체에서도 법개정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자문위원들도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또 최영도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협회 회장은 "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는 자에 대해서는 검찰의 기소독점권에 대한 예외로 위원회에서 기소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문사위 자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위원회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14조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 허영춘 유가협 의문사지회장, 최영도 변호사 등 1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결정된 내용을 참석 자문위원 9명의 명의로 조만간 대통령과 국회, 여야 정당등에 의견서로 제출하기로 했다.

zitrone@yna.co.kr

(끝)

"로를 험상규명특별법 개정안 제출"

“의문사 특검제로 풀자”

시민단체 ‘진상규명위’ 조사권한 강화해야

조사기간 제한철폐·압수수색·벌칙조항 신설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는 19일 오전 서울 한국일보 송현클럽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을 즉각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7면
국민연대는 이날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한 취지는 의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지만 현재 조사대상 사건 83건 중 59건이 처리되지 않아 조사시한을 감안할 때 사실상 진상규명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연대는 또 “전두환씨를 비롯한 사건 주요 관련자들의 출석거부와 국정원 등 관련기관의 협조거부로 진상규명 작업은 난관에 봉착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국민연대는 특검제를 주요 뼈대로 하는 개정안과 현재 이장복 의원 등이 발의해 국회 계류중인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했다.

두 개정안 모두 조사의 기간을 규정하지 않아 위원회가 시한에 얹매이지 않고 활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놨다. 또 피진정인에 대한 통화감청, 출국금지 및 압수수색 등

특별검사제 도입 개정안은 위원장을 특별검사로 하고 상임위원을 특별수사관으로 임명하는 등 위원회의 권한을 수정안보다 더욱 강화했다.

조찬배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은 “처참한 형태의 주검으로 발견된 자식을 자살이란 오명으로 덮여 죽을 때 부모의 심정은 젖어진다”며 “우리 역사에 한번도 이루지 못한 과거청산의 첫걸음을 이젠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유승용 기자 ysy@laborw.com



20일 서울 종로구 한국일보사 13층 송현클럽에서 열린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백순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이 법개정 추진 일정과 계획을 밝히고 있다.

/안일권 기자 pt999@laborw.com

“의문사위 시한연장·권한강화 검토”

김대통령 지시

김대중 대통령이 의문사진상규명 위원회의 활동시한 연장과 권한 강화를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의문사규명위원회 한상범 위원장은 이날 “김 대통령이 최근 시민사회에서 관에게 지시해 위원회 활동상황에 대한 실태파악에 나섰다”며 “의문사위의 시

한연장과 조사권 강화는 국회에서 결정할 일이지만 청와대쪽에서 시한연장 등에 관심을 갖고 있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족민주유기족협의회 등 45개 단체로 구성된 민주화운동정신 계승 국민연대도 이날 서울 종로구 수송동 송현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을 개정해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조

사기간을 연장할 것 등을 관계당국에 촉구했다. 이덕우 계승연대 집행위원장은 “의문사위의 활동기간이 한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의문사위는 전체 83건 중 24건만을 종료했다”며 “전두환씨를 비롯한 과거 권력 핵심인사들이 조사를 거부하고 있어 9월 16일까지로 한정된 의문사위원회의 조사기간 연장과 권한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선아 기자 anmadang@hani.co.kr

경향신문

의문사위 시한 연장 김대통령 검토 지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시한 연장과 조사권 강화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 관련기사 18·19면

의문사위 한상범 위원장은 20일 “지난 7일 김대통령에게 보낸 ‘의문사위 개선안’에 대해 대통령이 비서관에게 지시, 실태파악에 나선 상황”이라며 “의문사위 문제는 국회에서 결정할 일 이지만 비교적 긍정적인 결론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한위원장의 개선안에 대해 의례적으로 검토했을 뿐”이며 “의문사위에 대한 결정권은 전적으로 국회가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의문사위 위원장을 특별검사로 하는 등 의문사위 활동시한 연장과 조사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3차 개정안을 8월 중 한나라당 이부영 의원을 통해 국회에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장수기자 cameo@kyunghyang.com

M 취재수첩

오남석 사회1부기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직원들은 최근 ‘시한부 생명’이란 말을 자주 쓴다. 9월 16일까지가 의문사위 활동시한임을 빗댄 말이다. 이 말에는 대통령 직속기관인 의문사위가 국가기관으로부터도 홀대당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자조가 짙게 배어있다.

국가정보원은 의문사위 실지조사에 불응했다. 현직검사 3명과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은 출두요구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국군 기무사

도 예외는 아니었다.

21일 의문사위 조사단은 기무사령부를 방문, 80년대 ‘녹화사업(대학생 강제징집)’ 문서의 공개를 요구했다. 그러나 기무사측은 완강했다. “대한민국이 거꾸러져 도 안된다.” “국민들이 다 죽어도 보여줄 수 없다”는 말들이 기무사 장성의 입에서 쏟아졌다.

발언이 논란을 빚자 기무사측은 “국가기밀 유지를 위해 문서 고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다고 설명하다 나온 해프닝”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는 권위주의 정

권시절 수많은 ‘억울한 죽음’에 어떻게든 책임이 있는 국가기관이 진상규명 활동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의문사위는 진상규명 대상으로 83건을 선정했지만, 23건은 자료 불충분 등의 이유로 진상규명 불가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죽음의 의문을 풀어줄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지

도 모를 ‘공식적 기회’가 허무하게 끝날 조짐이 역력하다.

유족들은 의문사위 조사권 강화와 조사시한 연장을 바라고 있으나 난망에 가깝다. 18년간 자살로 조작됐다 의문사위에 의해 타살로 진실이 밝혀진 허원근 일병의 아버지 영춘(62)씨는 기해자에게 ‘모든 걸 용서할 준비가 돼 있으니 진실만을 밝혀달라’는 편지를 보냈다. 유족들은 ‘화해와 용서’를 준비해 두고 있다. ‘화해와 용서’는 진실을 밝히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왜 국가기관 조차 모르는 것일까.

/greentea@munhwa.co.kr

2002. 8. 22

의문사위 시한연장 군인권과 진실

사설

의문사규명위 시한 연장해야

18년 만에 진실이 밝혀진 허원근 일병의 타살사건은 오는 9월 16일로 끝나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확인해 주었다. 2000년 10월, 9개월이라는 한시적 기구로 출범한 '의문사위'는 지난해 7월과 올 3월 두 차례에 걸쳐 기간을 연장하면서 활동했으나 접수된 83건 중 24건만이 종결을 보았다. 국정원·기무사·국방부 등 핵심자료를 갖고 있을 법한 기관의 비협조와 참고 인물들의 증언거부 때문이다.

허원근 일병 사건은 다수의 목격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 차례에 걸친 재조사에서도 밝혀지지 않았다. 더구나 사건 당시 위장을 지시한 상사의 명령에 의해 죽은 전우에게 2발의 총을 더 쏘았다는 보도도 말문이 막힌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지금 시점에서 믿기지 않을 뿐, 당시에는 '죽은 사람은 어차피 죽었으니 부대장이 문제를 받고 진급에서 누락되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인정론이 통하던 시절이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생명·인권의식이 척박했던 것이다.

우리가 지난 시대의 의문사들을 규명하는 것은 과거

정권이나 특정 개인을 심판하고 처벌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 그보다는 억울하게 희생된 영혼과 그 가족의 상처를 씻어주고 명예를 회복해 주는 일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권에 대한 우리사회의 경각심을 높이고 이처럼 미개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생명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는 일이다.

'의문사진상규명위'의 활동시한은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다. 특별법이 허용하는 시한연장도 다 사용했으므로 법개정이 없는 한 여기서 손을 놓아야 한다. 그렇다면 손도 대지 못한 나머지 사건은 어떻게 되는가.

'의문사위'가 요구한 시한 폐지 혹은 연장은 불가피해 보인다. 아울러 '의문사위' 권한도 강화돼야 한다. 의문사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를 비롯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들이 하나같이 증언을 거부하지만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 특별법의 한계다. 진상규명을 위한 시한연장이라면 참고인, 증인 등의 강제구인과 위증, 증언거부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야 한다. 그래야 특별법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것이다.

2002. 8. 22

의문사위 시한 연장해야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빚어진 의문사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출범한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2년 동안 올린 실적은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의문사위는 고 최종길, 고 장준하씨 등의 죽음과 관련해 국가기관에 의해 조직적으로 은폐됐던 새로운 사실을 많이 밝혀냈다.

만취 상관의 총질로 사망한 사병이 군부대에 의해 자살로 은폐작됐음을 규명해낸 것도 실로 소중한 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처벌 시효는 지났지만 은폐작 관련자들 중에서는 혐의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 국방부의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의문사위는 접수된 85건 중 29건을 종결하고 3분의 2에 가까운 56건이 계속 조사 중인 상태에서 법적 활동 만료 시한(9월 16일)을 앞두고 있다. 시한을 의식해 자료 제출을 미적거리는 국가기관마저 없지 않다고 한다.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은 유가족들이 국회 앞에서 천막을 치고 422일 동안 벌인 농성의 산물이다. 타살이 자살로 조작됐던 병사의 아버지 허영춘(許永春)씨는 가슴

에 물은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18년 동안 뛰어다녔다고 한다. 계속 조사 중인 56명의 죽음 중에서 어느 죽음인들 안타깝지 않은 죽음이 있을 것인가. 국회는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해 활동 시한을 연장해 주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의문사위가 국가인권위와 통합해 자료 부족으로 인해 '조사 불능' 처리된 사건이나 장기 조사가 필요한 사건 등에 대한 시한 없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법법자를 처벌할 수 있는 시효는 지났더라도 극악한 인권유린 범죄의 진실 캐기에는 시효가 있을 수 없다.

법개정과 함께 중요한 것은 의문사와 관련된 국가기관이나 개인이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점이다. 전직 대통령들이 적지 않은 의문사가 발생했던 녹화사업과 관련해 의문사위의 소환을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잘못이다. 방문 혹은 서면조사를 통해서라도 진실을 규명하는 시대적 과업은 계속되어야 한다.

2002. 8. 27

연합뉴스

盧 "반인륜범죄 시효 달리해야"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후보는 27일 "국가공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인정되지 않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처벌과 배상의 시효 기산점을 일반범죄와 달리 진실을 밝힐 때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후보는 이날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방문, 유가족 등과 간담회 자리에서 "의문사특별법은 한시법인데 처벌시효는 (그대로) 두고 진실규명에는 시효를 두지 않아야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고 역사를 바로 잡을 수 있다"면서 "이를 일반법 형태에 당아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문사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기간이 너무 촉박해 기한연장 문제가 해결돼야 하며, 조사권한이 미흡해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 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 후보는 국내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의 투명성을 위해 민간수사기관에 맡기자는 유가족의 제안에 대해 "부모나 (피해) 당사자들을 위해 이런 제도가 있었으면 한다"면서도 "요즘도 군복무 생활에서 진실이 은폐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shchon@yna.co.kr

(끝)

○ 집중기획
의문사 진상규명



기간·권한 부족에 관련기관 땐죽

의문사위 성과 왜 미진한가



의문사 진상규명의 성과가 왜 미진한가. 의문사위는 조사활동 기간과 부족과 조사권의 미약함에다 진상이 규명될 때 도덕적으로 가끔 큰 딜레마를 앓을 시기 관련 기관들의 방해 및 비협조로 그 이유로 들고 있다. 의문사위 김준근 제1상임위원은 "현장된 조사기간과 미약한 조사권에 비춰 출범 당시부터 진상규명이 미진한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관련 기관 및 해당 기관에 종사하는 인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만 있었다면 진상규명이 지금보다 훨씬 양호하게 이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기관의 비협조=진상을 규명하려면 협조가 필수적인 국가정보원, 기무사령부, 경찰, 경찰, 교도소 등 관련 조사 대상 기관들이 현장 조사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뒷통에 제작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의문사위의 판단이다. 의문사위는 이들이 독재정권 당시의 의문사 진상이 드러나면 조직의 위상 및 명예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이유로 보안 등의 망계를 내세워 위원회의 현장 조사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의문사위가 대통령 소속인래 비춰 사실상 '항명'하는 셈이다.

1992년 의문사한 전남대생 문승필씨 사건의 경우 관리인을 것으로 보이는 국정원에 대해 해당자의 인적 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곳에서는 직원의 이름과 나이만을 알리겠다. 결국 의문사위가 거듭 요청하자 6개월 뒤에서야 겨우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를 알려주는 끝에 조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국정원은 또 서울대 최종길 교수 사망사건이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자 전신(前身)으로 당시 수사를 맡은 안기부나 중앙정보부가 직접 조사한 기록은 제공하지만 기무사 등 유관 기관의 조사 기록은 제출할 수 없어 밝혔다. 또 유관 기관의 기록 보유 여부 등에 대해서도 줄 수 없다는 공문을 보냈다.

아울러 기무사는 5공 시절 강제집단 운동권 학생에게 폭력 활동을 강요한 '녹화사업' 조사를 위해 문서 열람을 요청하는 위원회에 "보증기한이 지난 모두 폐기됐다"는 이유로 내세워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 다른 기관보다는 협조 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경찰청도 1992년 의문사한 노동자 박태순씨 사건 수사에 대한 자료를 열람코자 지난 4월 2일 방문 조사에 나선 의문사위 조사관들에게 "국정원의 보안 감독을 받고 있어 자료제공은 곤란하다"고 폐임을 떠넘겼다.

의문사위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판단해 관련 자료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데도 자료 제출 및 확인작업 과정에서 해당 기관들이 '문서실 확인 불가' 등을 이유로 내세워 조사 협조를 기피하거나 방해한다"며 안타까워 했다.

◆위원회의 법적 한계=의문사위는 녹화사업을 담당한 전보안사 과장 서모씨(62)를 조사하면서 서씨가 개인적으로 강제 징집자 조사 및 프락치 공작과 관련된 내용, 사업의 책임

사실 밝혀질 땐 汚名 우려

현장조사·자료제출 거부

유명사건만 치중 오류도

관련자들이 의문사위의 소환에 불응하거나 미리 일을 맞춰 하위진술해도 의문사위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라는 게 과태료 1천만 원 부과이다.

또 의문사위는 초기에 세인의 관심을 끌 만한 유명한 사건 위주로 조사, 딸 알리전 사건을 뒤늦게 시작하는 '작전상'의 문제도 노출했다. 1983년 12월 금하 누군가를 만나야 한다며 집을 나간 뒤 행방불명된 점을 놓쳐 사건과 삼성교도대 관련 의문사들은 자료 수집에만 치중하다 지난 2월 말에서야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으나 진상을 제대로 허기 전에 활동 시장에 부닥쳤다.

의문사위의 한 조사관은 "조사관 행정이 3~4개 쪽의 사건을 다루다 보니 주목받지 못하는 사건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룰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의문사위 관계자는 "진상규명 작업이 역사로 바로 세운다는 심리적 중압감에 놓여 조사 과정에서 실수도 있었다"며 "과거의 부끄러움을 씻어내고 바로 서겠다는 관련 권리기관들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용목기자 ahn@kyunghyang.com



지금까지 밝혀진 것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0년 10월 출범한 뒤 전체적으로 실적은 미진하지만 일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다. 다음은 의문사위원회가 지금까지 밝혀낸 조사내용의 일부이다:

• 의문사 인정

▲박영두=1984년 10월 삼성미비에 의한 사망으로 밝혀진 박씨(당시 29세)는 삼성교도대에서 청송교도소로 이감된 뒤 "김호법 철폐하라"고 주장하고 고문과 구타 등 가혹행위로 숨졌다.

▲임기윤=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부산 보안사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은 숨진 임목사(당시 58세)는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의 모욕적 언사로 격한 언쟁 끝에 심한 스트레스로 고혈압이 악화돼 뇌출혈로 숨졌다.

▲최종길=73년 간첩 혐의로 중앙정보부 남신 분실에서 조사 중 숨진 서울대 법대 최종길 교수(당시 42세)는 간첩 혐의를 자백한 뒤 양심의 가책을 느끼자살했다는 발표와 함께 구타와 고문 등 가혹행위로 숨졌다.

▲이윤성=83년 5월 군부무장보안사에서 월북기도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자살감을 끊어져 자살했다고 발표된 성균관 대생 이씨(당시 21세)는 녹화사업 과정에 실린 3발을 맞고 숨진 체 발견된 당시 서울대 한진 총장 박씨(당시 31세)는 구타로 타살됐다는 일본 법의학자 가미야마 자토(上山武太郎)의 강정 결과가 나왔다.

▲최종길=91년 노동 운동에 회의, 병원 등에서 투신자살했다고 발표된 한진증공업 노조위원장 박씨(당시 40세)는 구타로 타살됐다는 일본 법의학자 가미야마 자토(上山武太郎)의 강정 결과가 나왔다.

▲최종길=91년 노동 운동에 회의, 병원 등에서 투신자살했다고 발표된 한진증공업 노조위원장 박씨(당시 40세)는 구타로 타살됐다는 일본 법의학자 가미야마 자토(上山武太郎)의 강정 결과가 나왔다.

▲최종길·임기윤씨 등 6명은 민주화 관련 의문사 인정에 맞고 숨진 체 발견된 당시 서울대 한

▲허원근=84년 군부 내에서 자살한 것으로 발표된 허밀령(당시 22세)은 숨에 허한 의사관이 죽은 총에 맞아 숨졌다.

▲김준애=97년 숨진 한총련 투정국장 김씨(당시 27세)는 전남 광주에 자살로 조사하기 위해 군 진부들이 한 아파트에서 끌어치운 후에 조사했다는 의혹이 경찰의 검거 작전을 피하다 추락한 것이다.

▲김성수=86년 부산 송도 앞바다에서 의식체로 발견된 서울대생 김씨(당시 18세)는 경찰이 발표한 '성적 비관·자살'이 아니라 구타를 당한 구사대 목력에 항의해 몸독자살.

▲이민창=89년 전남 거문도 해변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이씨(당시 26세·중앙대 안성캠퍼스 총학생회장)는 심장에 의한 의식체로 발표됐으나 수사 결과와 달리 시신 발견 장소에 숨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자살 현장에 대한 조사 및 타살 가능성성이 높아졌다.

▲정경식=87년 실종돼 미산에서 유골로 발견된 대우증공업 창원공장 노동자 정씨(당시 28세)는 당시의 직업 사인은 의사 이전의 외상이었다. 또 이씨 혼자 거문도에 갔다는 수사 결과와 달리 인기부 여성원이 동행했으며 사건 장소에 다수의 관계인들이 조사로 협조하지 않았다. 상지대 점대화 교수(정경식)는 "국회와 정부 등이 의문사위의 활동기간 연장과 조사 권한 강화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거나 관련 기관들이 조사로 협조하지 않아 진상규명이 수포로 돌아가면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린 공범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홍목기자

법·제도적 특단없인 '반민특위' 再版 공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일제 잔재 청산에 실패한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 현 삼중대로리면 특단 반민특위 활동에 기여하거나 진보의 조치가 없는 한 의문사위가 진상규명에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종언을 고려해 전일 반역자 색출 과 처벌을 통해 역사를 비운 세우려다가 실패한 반민특위의 재판(再版)이 될 공산이 크다.

의문사위는 최근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립현충원, 기무사령부 등 조사대상 기관들의 비협조와 무성의 대응은 반민특위 활동에 제동을 걸었던 당시의 경찰 등 전일과가 정통성이 큰 춤집을 넘긴 것은 물론 사설 발전 및 통합에 참여를 이되고 있다.

의문사위가 '제2의 반민특위'가 되지 않으려면 정부·당국은 물론 국민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상지대 점대화 교수(정경식)는 "국회와 정부 등이 의문사위의 활동기간 연장과 조사 권한 강화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거나 관련 기관들이 조사로 협조하지 않아 진상규명이 수포로 돌아가면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린 공범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홍목기자

반민특위는 1948년 9월 22일 '반민족행위 처벌법(반민법)' 제정으로 출범했지만 이승만 대통령, 천일군·경찰 등의 조치로 박탈당한 이승만 대통령과 천일군·경찰 등의 조치로 박탈당한 이승만 대통령과 조사관은 "진상규명 작업이 역사로 바로 세운다는 심리적 중압감에 놓여 조사 과정에서 실수도 있었다"며 "과거의 부끄러움을 씻어내고 바로 서겠다는 관련 권리기관들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용목기자 ahn@kyunghyang.com

2002. 9. 3



2002. 9. 4

'의문사위' 특별법 개정하라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시한이 불과 열흘 남짓밖에 남지 않았다. 접수된 83건의 의문사 중 현재 30건에 대해서만 조사가 완료돼 이대로라면 나머지 50여건은 '진상규명 불능'으로 영구미제로 남게 될 처지라고 한다. 유가족과 민주화운동단체 등이 400여일 국회 앞 농성 등 괴벨한 호소로 일어낸 진상규명의 활동이 제대로 매듭을 짓지 못한 채 중단되는 것은 희생자나 유족은 물론 우리들 스스로에게도 부끄러운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애써 진실을 외면하려 한 암울했던 시절, 우리가 그나마 한가닥 희망을 꿈꿀 수 있었던 것은 목숨을 걸고 세상에 진실을 외친 이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어느날 수사기관에 끌려가거나 군대에 잡혀간 뒤 의혹의 주검이 되 돌아왔다. 유가족은 자살이든 타살이든 사랑하는 남편이, 자식이 어떻게 최후를 맞았는지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다. 그것마저 밝혀내지 못한다는 것은 그들의 고난으로 민주화가 됐다는 사회에 사는 우리들의 직무유기다.

의문사위는 그동안 각각 실족사와 자살로 발표된 장준하 선생 및 서울대 최종길 교수의 타살 정황을 밝혀내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보여줬다. 하지만 두차례의 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의문사위가 많은 사건을 해결치 못한 것은 역사에 죄를 짓고도 반성할 줄 모르는 일부 공권력의 방해 때문이기도 하다. 대통령의 협조지시에도 불구하고 국정원과 기무사, 경찰조차도 조직보호 논리에 빠져 자료제출이나 현장조사 거부, 소환불응 등으로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

권력기관들이 의문사위를 우습게 보는 것은 강제수사권이 없는 데다 비협조시 1천만원의 벌금밖에 매길 수 없는 한계에 있다. 정치권과 정부는 대선정쟁에만 목을 매지 말고 억울한 죽음의 진상이 온전히 밝혀질 수 있도록 조사시한 연장과 권한 강화, 소환이나 자료제출 거부 시 처벌 강화 쪽으로 조속히 특별법을 개정해야 마땅하다. 과거 '반민특위'가 온갖 방해세력 때문에 친일역사 청산에 실패한 전철을 되밟을 수는 없다.

2002. 9. 4

“진실규명 막는 惡의 세력 있다”

활동종료 앞둔 한상범 의문사규명위원장



“여전히 진실을 감추고 왜곡하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한상범(韓相範·68)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사무실에서 기자를 만나 “과거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거나 권력에 기상해 부와 관세를 누렸던 ‘악의 세력’이 진실 규명을 막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년9개월동안 85건 조사 너무 벅차

과거잘못 쉽게 잊는 국민의식 아쉬워

64년 한일협정 반대 교수 단 서명을 주도한 이래 40년 가까이 법학자와 불교인권운동가로서 사회 참여에 앞장 섰다. 지난 4월 양승규(梁承圭) 위원장의 뒤를 이어 2대 위원장을 맡은 그는 “각계 인사를 만나 규명위 기한연장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한연장이 왜 필요한가?

기한 내에 모든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의문사처벌 중대한 사안을 미결로 방치하는 것은 의문사 특별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국가기관의 비협조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 의식이다. 진실규명이 우선이고 화해와 용서는 그 다음이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권력자 저지를 과거의 잘못을 너무 쉽게 잊는다. “좋은 게 좋은 것 아니냐”, ‘그 시절엔 어쩔 수 없었다.’는 식의 상황논리를 아무런 비판없이 받아들인다. 규명위 조사를 거부하는 세력은 이같은 행정을 잘 알고 있다. 규명위의 조사시 형까지만 비티면 영원히 진실을 묻어볼 수 있다

고 생각한다.

※이세영기자 sylee@kodaily.com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출현과 유지에 협력했던 사람들은 종 상당수가 사회 각 부문의 요직에 남아 과거정신을 방해하고 있다. 이들은 과거 자신들이 비호했던 권력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궁극적으로는 규명위가 고사(枯死)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규명위가 200여명의 참고인들을 대상으로 1년 넘게 조사한 사건은 불과 며칠 동안의 취재로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의문사특별법이 개정된다면 방향은

3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 규명위를 해체한 뒤 인권위법을 개정, 인권위 안에 의문사 문제를 다루는 기구를 신설, 조사를 맡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의문사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모든 미결사건을 조사하는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셋째, 규명위를 존속시키되 암수수색이나 강제소환을 가능케 하는 등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있다.

※의문사 규명의 역사적 의미는

권위주의 정권의 치부를 청산하고 역사의 왜곡된 물길을 바로잡는 것이다. 여기에 반발이 있을 리 없다. ‘악의 세력’까지도 만족시키는 객관적 것대란 없기 때문이다. 악의 세력과의 비타협적 싸움은 계속돼야 한다.

※이세영기자 sylee@kodaily.com

2002. 9. 4

故최종길 교수 간첩누명 벗어

의문사규명위 활동 성과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1월 공식 출범한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지금까지 85건의 의문사 사건을 접수, 이 가운데 30건을 미무리지었다.

규명위는 그동안 최종길·김준배 사건 등 베

일에 끌어든 사건의 진상을 밝혀냈지만 유족

조시관들이 잇따라 사

망령화을 등으로 위원

장과 임원들이 교체되

는 전통도 겪었다.

규명위는 전국 민족

민주 유가족협의회와 추모단체 연대회의 등

이 지난 98년 11월부터 40여일 동안 의문사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국회 앞 천막 농성을 벌

이는 등 오랜 산고를 거친 끝에 출범했다.

하지만 규명위 조사는 처음부터 복도부딪쳤다. 검·경을 비롯한 국가기관들이 “보존연

한니 지나 자료가 폐기됐다.”, “국가기밀과

관련된 사항이다.”며 관련자료 제출과 참고

인 조사에 불응했기 때문이다. 강제구인과 압

수수 등을 강제 수사권이 없는 규명위의 한계

을 드러낸 것이다.

조사기간이 짧은 점도 계속 문제로 지적됐

다. 당초 의문사특별법이 규정한 조사기간은 불과 9개월. 수사기관들에 의해 의도적으로 은폐됐고, 오래전에 발생한 사건의 진상을 밝

혀내기엔 터무니 없이 짧은 시간이었다.

조사가 난관에 봉착하자 일부 유가족은 국

가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불

만을 드러냈다. 규명위의 위상 등을 둘러싸고

정부 파견 조사관들과 같은 민간 출신

조사관들이 잇따라 사

망령화을 등으로 위원

장과 임원들이 교체되

는 전통도 겪었다.

규명위는 전국 민족

민주 유가족협의회와 추모단체 연대회의 등

이 지난 98년 11월부터 40여일 동안 의문사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국회 앞 천막 농성을 벌

이는 등 오랜 산고를 거친 끝에 출범했다.

하지만 규명위 조사는 처음부터 복도부딪쳤다. 검·경을 비롯한 국가기관들이 “보존연

한니 지나 자료가 폐기됐다.”, “국가기밀과

관련된 사항이다.”며 관련자료 제출과 참고

인 조사에 불응했기 때문이다. 강제구인과 압

수수 등을 강제 수사권이 없는 규명위의 한계

을 드러낸 것이다.

조사기간이 짧은 점도 계속 문제로 지적됐

다. 당초 의문사특별법이 규정한 조사기간은

불과 9개월. 수사기관들에 의해 의도적으로

은폐됐고, 오래전에 발생한 사건의 진상을 밝

혀내기엔 터무니 없이 짧은 시간이었다.

조사가 난관에 봉착하자 일부 유가족은 국

가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불

만을 드러냈다. 규명위의 위상 등을 둘러싸고

정부 파견 조사관들과 같은 민간 출신

조사관들이 잇따라 사

망령화을 등으로 위원

장과 임원들이 교체되

는 전통도 겪었다.

규명위는 전국 민족

민주 유가족협의회와 추모단체 연대회의 등

이 지난 98년 11월부터 40여일 동안 의문사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국회 앞 천막 농성을 벌

이는 등 오랜 산고를 거친 끝에 출범했다.

하지만 규명위 조사는 처음부터 복도부딪쳤다. 검·경을 비롯한 국가기관들이 “보존연

한니 지나 자료가 폐기됐다.”, “국가기밀과

관련된 사항이다.”며 관련자료 제출과 참고

인 조사에 불응했기 때문이다. 강제구인과 압

수수 등을 강제 수사권이 없는 규명위의 한계

을 드러낸 것이다.

조사기간이 짧은 점도 계속 문제로 지적됐

의문사 인정 처리 현황

사건명	사건개요	진정취지	위원회 결정내용
비상투시간 (2001.1.13 조사개시)	경총교도소 수감증 84년 10월 사망	· 79년 부미시태시 사 위험가 · 교도소내 고문 구타 로 사람 가능성	· 위법한 공권력 개인 인정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임기운시간 (2001.1.13 조사개시)	보이사 조사도중 혼 술 부산 국군통합병	· 구타 등 위법한 공권 력의 행사로 인한 사 망 의혹	·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위법 한 공권력 개인 인정
최종길시간 (2001.1.13 조사개시)	유럽거점 간첩단 사 건 관련, 73년 10월 임기운증보부에서 조사 발령증 증명건을 알 려서 변호	· 유럽거점 간첩단 사 건 조작된 사건 증명외 고문에 대한 사항의혹	·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위법 한 공권력 개인 인정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85건 접수 30건 종결 85건 접수 30건 종결 공권력 위법 6건 규명 85건 접수 30건 종결 공권력 위법 6건 규명	· 82년 12월 육군 5A; 단 북부종 이동해 12월 3일의 충상 입 온 변사로 보안대 조사에서 발견	· 자살이유 불분명 · 일간 보안부 대조사 표를 내는 등 불법화을 도 표면화됐다. 이로 인 해 초대 양승규(梁承 圭) 위원장 등 일부 위원 회원들이 교체됐다.	· 자살이유 불분명 5 일간 보안부 대조사 표를 내는 등 불법화을 도 표면화됐다. 이로 인 해 초대 양승규(梁承 圭) 위원장 등 일부 위원 회원들이 교체됐다.
김준배시간 (2001.1.13 조사개시)	97년 9월 한총련 뿐 경국장으로 수배를 경찰추적 받다 경주 시 북구 오치동 아 파트 회단서 변사체 로 발견	· 아파트 12층에서 경 국장으로 수배를 끌 걸어 피해 캐이블 인입선 타고 도주하 4층돌이에서 추락 경찰의 무리한 긴거 작전 및 추가 폭행 의혹 제기	·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위법 한 공권력 개인 인정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오범근시간 (2001.1.20 조사개시)	88년 3월 피업농성 해산기후 회사간부 호를 펴 쓰러진 상 태로 발견, 병원에 서 사망	· 노조재건에 열의 보 이는 등 자살이유 없 경찰 허위보고 증 명 포착	· 노조재건에 열의 보 이는 등 자살이유 없 경찰 허위보고 증 명 포착

※ 지난달 중간 발표에서 군 담당의 자살결론을 뒤집은 하원근(許元根) 일병 사건도 군의 사건 등 12건이다. 그러나 장준하·이내창·문사에 대한 일반의 인식을 새롭게 한 계기로 박창수 사건 등 18건에 대해서는 판계기관의 인정받고 있다.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55건 가운데 30건은 비밀조사 등으로 아직 1차보고 조사 이뤄지지 운데 조사결과 보고가 끝난 것은 최석기·박

원근 등 23건, 보강조사인 것은 하원근

등 12건이다. 그러나 장준하·이내창·

박창수 사건 등 18건에 대해서는 판계기관의

비밀조사 등으로 아직 1차보고 조사 이뤄지지

않고 있다.

※ 이세영기자

“의문사법 활동 연장하라”

시민단체, 법개정 촉구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의 조사시한이 오는 16일로 다가옴에 따라 기간연장과 조사권한 강화를 위한 법개정 필요성을 주장하는 민주화관련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일 유가협 등 민주화관련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지난 2000년 10월 활동을 시작한 진상규명위가 의문사 85건을 조사해 왔지만 시간적 제약에다 조사권한 미비, 관계기관 비협조 등으로 지금까지 34건만 종결처리하는데 그쳐 나머지 사건 중 상당수가 ‘진상규명 불능’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유가협 관계자는 “최근 진상규명위가 18년전 자살한 것으로 군이 발표했던 허원근 일병이 상급자의 총탄에 맞아 타살됐다는 조사결과를 발표, 사회적으로 커다란 반향이 일면서 ‘의문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한 것도 법개정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며 “조사시한 연장과 실질적 조사활

동을 위한 조사권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화운동정신 계승국민연대 이은경 사무처장도 “두 번에 걸친 법 개정에서 기간 연장만이 결정되면서 진상규명위 활동의 근본적 문제점이 아직도 해결되지 못했다”며 “대선을 앞두고 정쟁에 몰두해 있는 정치권은 의문사 진상규명이라는 역사적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실질적 법개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혜권 기자

의문사법 개정, 국회가 나서라

역사의 진실을 캐어 과거를 청산하려는 노력은 역사를 바로 세우고 다시는 어두운 역사가 반복되지 않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한국 현대사에서 과거청산은 완강한 저항에 부딪쳐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다. 일제 36년 간의 친일역사도 친일의 어두운 과거에 동참했던 세력들이 왜곡하고, 희석·변질시키는 등의 저항에 부딪쳐 인적 청산조차 제대로 안 된 실정이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군사독재 시절 국가 공권력이 비호하고 은폐하고 조작한 의문사의 진실을 캐는 작업을 해온 기구다. 그러나 이 위원회의 활동도 의문을 풀어주고 진실을 밝혀줄 수 있는 국가기관들의 비협조에 직면한 채 활동마감 시한이 16일로 임박했다. 접수된 85건의 사건 가운데 34건만 종결처리하고 나머지 의문사는 진상규명이 안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발족 당시부터 조사권한도, 강제력도, 인원도 부족한 채 시한을 정해 의문사를 규명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였

음이 드러났다. 범죄에 가담했던 국가기관들이 완강하게 저항하고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앞에서 422일 동안 노숙을 한 끝에 의문사위를 발족하게 만든 유가족 단체들은 의문사위 활동시 한을 연장하고, 또한 국가권력에 의한 범죄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위원장을 특별 검사로 임명하는 등 의문사위가 강력한 수사권을 갖도록 하는 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참회할 때만이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고 역사는 발전하는 것이다. 먼 옛날의 일이 아니고 관련자들이 모두 살아있는 머지않은 과거의 역사마저 진실을 규명하지 못하는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역사의 진실을 캐는 데 공소시효나 시한이 있을 수 없다. 의문사를 규명하려는 노력이 없었다면 허원근 일병의 죽음이 군대가 조직적으로 은폐한 탓이었음을 영원히 알 수 없었을 것 아닌가.

◆ 젊은이 광장

의문사규명위 강력한 권한부여를



제 윤아
서울여대신문사
편집장

내 얘기부터 꺼내야 할 것 같다. 지난 1학기부터 대학신문사 편집국이라는 조직의 장(長)을 맡아 오면서 한 조직을 꾸려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닫고 있다.

무엇보다 주어진 목표를 이루기 위해 구성원들에게 '강경책'을 사용해야 할 때 가장 고민이 많았다.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같은 목표 아래 공동 생활을 하는 조직의 특성상 '강요'가 필요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오산이었다. 현실적으로 아무런 강제 수단 없이 제각각 개성이 다른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얻어내기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다.

국가기관·당사자 비협조적

한 예로 지난 여름방학 기간에 우리 대학신문사 구성원들은 지각을 하지 않기 위한 고육책으로 지각을 하는 당사자에게 10분에 벌금 2000원 씩을 물리기로 결정했다. 모든 구성원의 합의를 거쳐 출근시간을 정했는 데도 학생 신분으로서 적지 않은 벌금을 강제로 걷어야만 비로소 "시간을 지켜야 한다."는 긴장감이 돌았던 것이다.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회에도 이처럼 강제성 있는 강력한 권한이 필요한 조직이 있다.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라 오는 16일 활동을 마감하도록 돼 있는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그것이다. 법이 정한 시한을 열흘 정도 앞둔 규명위는 83건의 접수 사건 가운데 30건만 종결했다고 한다.

지난해 1월 본격 활동에 나선 규명위의 성과가 미진한 것은 20~30년전 일어난 의문사의 진상을 밝히는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국

가 기관이나 당사자들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980년대 초 강제 징집한 대학생들에게 끄적이 활동을 강요한 이른바 '녹화사업'과 관련, 지난 4월 규명위의 동행명령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불응한 것에서 이같은 문제점이 단적으로 드러난다.

규명위는 동행명령을 거부한 두 전직 대통령에게 각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한다. 규명위의 시한을 연장하고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 주는 대목이다.

법 고쳐 활동시한 연장해야

규명위의 존재 이유는 너무나 자명하다. 만시지탄(晚時之歎)이지만 왜곡되고 일그러진 우리 의 현대사를 바로 세우고, 억울하게 죽어간 고인(故人)들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는 점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압수수색권과 계좌추적권, 강제구인권 등 효율적인 조사에 반드시 필요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현재의 규명위는 자칫 허울만 좋은 형식적인 기구에 그칠 수 있다. 국정원, 기무사, 검·경 등 막강한 국가 기관을 상대해야 하고, 오랜 기간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은폐된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과태료 1000만원 정도의 '강경책'으로는 국가기관의 협조나 원활한 조사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유가족과 관련 단체들의 오랜 투쟁 끝에 힘겹게 발족한 규명위가 이제라도 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한을 연장하고 권한을 강화하도록 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치권은 권력투쟁과 당리당락에만 매달리지 말고 지금 당장 민의의 장(場)인 국회에서 법 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강력한 권한이 없으면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 씹쓸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굴곡된 시대의 아픔을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고의적 범죄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의문사조사활동 16일 이후 중단될듯

법개정안 국회통과 난망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활동 기간 연장과 조사권 강화를 골자로 한 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 3차 개정안이 의문사위의 법정 활동시한인 16일까지 국회에서 통과되기 힘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의문사위는 16일 이후에는 행정법에 따라 조사활동을 일단 중단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8일 의문사위에 따르면 민주당 이창복 의원 등이 국회에 계류 중인 의문사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6일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한나라당 김원웅 의원 등의 발의로 특검제 도입을 담은 개정안이 다음주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는 것.

수정안에는 의문사에 대한 형사소송 법상의 공소시효, 민사소송법상 소멸시효 적용제한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각 정당들이 대선을 앞두고 정치 현안에 몰두하면서 법사위 개최 여부마저 불투명한 실정이다.

안홍욱기자 ahn@kyunghyang.com

2002. 9. 9

의문사위, 활동시한 임박... 미해결 사건 산더미

국가기관 비협조 진상규명 '막막'

인적사항 외에는 관련 자료 협조 적어
실질적 권한 없이는 진상규명 어려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 조사활동에 대한 국가 권력기관의 저항과 비협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의문사규명위는 오는 16일 조사활동 종료시한을 앞두고 있어 법개정을 통한 강제수사권 부여 등 실질적 권한 확대 없이는 진상규명이 근본적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11면

8일 의문사규명위가 작성한 '관련기관별 조사 비협조 사례'에 따르면 국립정보원은 조사1과 사건과 관련, 일부 사건 외에는 거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았고 대부분 인적사항 파악 외에는 '자료 없음'으로 회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3과에서는 녹화사업 조사를 위해 국군기무사령부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기무사는 "보존기간 경과로 폐기됐다", "윤석양 사건 이후 폐기됐다"는 이유로 협조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과 기무사는 의문사규명위

오는 16일까지 베타기 작전으로 나온 것도 진상규명의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의문사규명위의 조사권 강화와 위증처벌 보강, 반인륜 범죄의 공소시효 예외 등을 담은 법안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상범 의문사진상규명위원장은

"정보공안기관의 협조가 백이" 뒷 히고 있고 현행법상 조사에 협조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 외에 다른 대응책이 없다"며 "특별법의 처벌 규정을 보강하고 위원회 활동에 방해나 장애를 가져오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dongack@laborw.com

의 실지조사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검찰의 경우 문용섭 사건과 관련, 사건의 은폐·축소 여부에 대한 조사를 위해 인권지검 명모 차장검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거부했다. 김준배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영월지검장 정모 검사도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는 공권력의 불법개입 여부를 밝히기 위해 권력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임에도 기밀, 보안 등의 이유로 자료공개를 거부할 경우 특별한 대응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조사에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00만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실질적 처벌규정과는 거리가 멀다. 실제로 의문사규명위의 과태료 부과는 3차례에 그쳤으며 대전 고도소에 복역 중인 조모씨만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권력기관과 핵심 참고인들이 의문사규명위의 조사시한인

2002. 9. 9

의문사진상규명 이대로 멈출 것인가

① 유가족의 피맺힌 '한' 가해자의 다문 '입'

역사적 진실 또 다시 사장되려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16일 모든 조사활동을 끝낼 경우 현재 조사 중인 50건에 가까운 의문사의 진실은 역사에 묻힐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의문사규명위의 활동에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 2000년 10월 출범한 의문사규명위는 지난 6일 현재 83건의 조사대상 가운데 8건의 사건을 민주화 운동과 관련, 공권력의 직·간접적 개입으로 사망했음을 인정했다.

서울대 법대 최종길 교수의 죽음에 중앙정보부의 공작이 있었음을 밝혀냈고 고 박영두씨가 수감 중 재소자 치우개선을 요구하다 고문과 구타로 인해 숨을 거둔 사실도 밝혀냈다. 또 의문사규명위의 조사 과정에서 녹화사업과 학원 프리처 공작의 실체도 일부 규명했다.

그러나 재야지도자 장준하 선생, 노동운동가 박창수 열사 사건 등 대표적 의문사에 대해서는 뚜렷한 실체를 규명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는 의문사규명위의 조사활동이 자칫 가해자에 대한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낳고 있다.

의문사규명위의 한계는 제한된 조사기간과 유명무실한 조사권한 때문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이를 지켜보던 유가족들도 하나, 둘 눈기가 붉어지더니 복받친 울음을 터뜨렸다. 가슴에 물어둔 아픔이 동시에 폭발한 것이다.

유가족들이 이날 눈물로 호소한 것은 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의 개정이다. 의문사규명위가 오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개정하라!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가 지난달 30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조사권한 강화와 기간연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기범 기자 buncom@laborw.com

조사권한 제약, 권력기관 비협조로 한계

활동중단될 경우 가해자 면죄부 줄 수도

테도로 나설 경우 과태료 부과 이외에는 특별한 대응방법이 없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국정원, 검찰, 기무사 등 권력기관의 저항과 비협조는 의문사규명위 활동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였다. 실제로 이를 기관은 보안 등의 이유로 조사 모두 조사, 실체를 규명한다는 것에 불응하거나 자료협조를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해방 이후 반민족특별위원회가 진일과의 저항으로 좌초한 것처럼 의문사규명위는 역사의

진실을 감추려는 권력기관의 저항으로 근본적 한계에 부딪힌 것이다.

정운희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의문사진상규명국장은 "의문사가 국가폭력에 의한 억울한 죽음이라는 것이 조금씩 밝혀진 것은 성과"라며 "하지만 의문사규명위 활동이 중단될 경우 가해자들에 대한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류정민 기자 dongack@laborw.com

의문사진상규명 이대로 멈출 것인가 (마지막 회) ② 특별법 개정으로 진상규명 다시 시작하자

‘역사 바로세우기’ 계속돼야

당신의 가족 중 누군가가 부당한 공권력 개입으로 목숨을 잃고 그 ‘사인’마저 왜곡·조작됐다면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이다. 의문사 유가족들의 과거 정권에서 당했던 일은 특권층이 아니었다면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다. 추악한 과거를 대충 덮는다고 해서 역사적 진실마저 가릴 수는 없다. 그러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현행법에 따라 오는 16일로 모든 조사활동을 중단할 위기에 놓여 있다.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3차 개정안’의 처리 여부에 따라 역사적 진실찾기가 계속될 것인지 여기서 끝날 것인지도 곧 결정이 나게 된다.

◇김槐진 진실=의문사규명위원회의 성과 중 하나는 ‘김槐진 진실’에 관심을 갖도록 한 점이다. 정권의 유지를 위해 간첩단을 조사하고 학원 감시를 목적으로 프락치 공작을 펼쳤다는 사실 등이 드러난 것이다. 이는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제기된 문제였지만 정부기관을 통해 이러한 사실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과거 의문사의 의혹들이 말끔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녹화사업, 프락치공작, 간첩단사건 등은 더욱 많은 의혹을 남긴 채 조사는 제자리길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프락

치 공작으로 얼마나 많은 학생자가 반인륜적 행동을 했는지, 간첩단 조작으로 민주인사들을 얼마나 억압했는지는 여전히 미궁 속에 빠져 있다. 국정수석, 국군기무사령부 등 관계기관들이 굳게 입을 닫고 있어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특별법 개정으로 의문사 규명해야=현행법은 의문사규명위의 조사활동 시한을 오는 16일

김첨과 압수수색 요청권한 등이 담겨 있다. 이와는 별도로 김원웅 한나라당 의원 등은 의문사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의문사규명위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각각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로 하고 조사관을 특별수사관으로 임명, 사법경찰권을 갖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보수층 반대-정치권 무관심이 걸림돌

특검제도입 검찰반발예상…논란 불가피

로 못박고 있다. 의문사에 대한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더라도 이 날 이후에는 조사를 벌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을 개정할 경우 얘기는 달라진다.

특별법이 개정되면 조사활동 시한 연장은 물론 실질적인 조사권한 확대 등이 이뤄질 수도 있다. 이창복 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20여명은 의문사위법 개정안의 수정안을 지난 6일 국회에 제출했다.

수정안에는 △의문사 사건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민사소송법상 소멸시효 적용배제 △참고인 등에 대한 통화내역

해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국회의원들도 법개정에 적극성을 보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정치권의 관심이 대선에 쏟려있는 점도 법개정에 걸림돌이다. 국회 법사위에서 특별법 개정안이 논의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만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는 않고 있어 ‘조사활동 시한’은 연장되지 않겠냐는 기대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의문사규명위는 오는 16일 조사가 종료될 경우 10월 16일까지 대통령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최종 보고서 발간은 대통령보고 후 5개월 이내인 다음 해 3월 16일까지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의문사규명위가 준속하는 다음해 3월까지 법개정이 이뤄진다면 조사활동이 재개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이은경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무처장은 “현재 정치 상황을 볼 때 16일까지 법개정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의문사규명위의 실질적 권한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지만 차선책으로 일단 조사시한을 연장한 뒤 권한확대를 논의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특검제 도입 역시 국회에서 논의되더라도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이 권한축소를 우려

/류정민 기자
dongack@laborw.com

‘억울한 죽음’ 또 덮을건가

의문사 규명 계속돼야 한다

◎ 성과와 한계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한시적인 대통령 소속 기구로 2000년 10월 발족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오는 16일 1년 9개월의 법적 활동시한을 마감하게 된다. 의문사위는 그동안 최종길 교수 사건, 하원근 일병 사건 등 과거 권위주의 시절 공권력에 의한 의문사를 주제로 진상을 규명해내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들의 완강한 벽에 부딪쳐 아직도 많은 의문사들이 여전히 어둠에 갇혀 있다. 이에 민간단체들은 의문사위 활동시한 연장과 권한강화를 부르짖고 있지만, 국회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성과와 시한연장의 필요성, 현실적인 난관과 역사적인 의미 등을 두 차례로 나누어 짚어본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출범 초기, ‘불행하고 점의를 못한 과거를 청산한다’는 뜻에서 ‘제2의 반민특위’로 불렸다. 그러나 아직도 진상규명을 기다리는 많은 의문사 사건들을 넘겨두고 조사 기한에 맞겨 활동을 종결하게 된 현 시점에서 보면, 미완으로 끝난 반민특위의 좌절까지 딱습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의문사 규명 계속돼야 한다
▶ 1면에서 이어짐

또 84년 청송고도소에서 숨진 박영두씨가 당시 교도관들의 가혹행위로 숨졌으나, 사인이 심장마비로 은폐·조작된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이밖에 80년대 강제징집된 대학생들에게 프락치 활동을 강요한 ‘녹화사업’이 한희철씨의 자살을 불러왔으며, 최근에는 84년 숨진 하원근 일병이 타살된 뒤 군 상부에 의해 은폐됐다는 의혹을 제기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다.

최종길 교수·허일병 등 진상 접근
“활동시한 폐지·특검제 도입 절실”

그동안 의문사위가 조사한 과거 의문사 사건은 모두 83건이다.

정치권에서도 한나라당 김원웅 의원과 민주당 이창복 의원이 위원회의 기한 철회와 조사권한 강화를 빼대로 하는 의문사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김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3차 개정안은 위원회 활동시한을 없애는 것 말고도 위원장이 상임위원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는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도록 해 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을 빼대로 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정치권이 조사기한 연장을 외면하는 까닭은, 국정원·경찰·기무사 등 권력기관의 눈치를 살펴야 하고, 과거 의문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사들이 각 정당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의문사위의 활동 기한 연장 등을 빼대로 하는 법개정 논의가 밀바닥에서부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유가족대책협의회’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 연대회’ 민주노총 등 유가족·시민·사회단체들은 의문사법 3차 개정안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자체가 차운위(위원장 박형규 목사)도 지난달 21일 청와대와 정당, 시민사회 단체 등에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 관련 건의서’를 보내 △충분한 조사기한 설정 △조사관의 좌절까지 딱습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넣고 있다.

의문사의 활동성 사무국장은 “누명을 쓴 채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진 박영두씨가 당시 교도관들의 가혹행위로 숨졌으나, 사인이 심장마비로 은폐·조작된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이밖에 80년대 강제징집된 대학생들에게 프락치 활동을 강요한 ‘녹화사업’이 한희철씨의 자살을 불러왔으며, 최근에는 84년 숨진 하원근 일병이 타살된 뒤 군 상부에 의해 은폐됐다는 의혹을 제기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다.”

의문사의 활동성 사무국장은 “누명을 쓴 채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진 박영두씨가 당시 교도관들의 가혹행위로 숨졌으나, 사인이 심장마비로 은폐·조작된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이밖에 80년대 강제징집된 대학생들에게 프락치 활동을 강요한 ‘녹화사업’이 한희철씨의 자살을 불러왔으며, 최근에는 84년 숨진 하원근 일병이 타살된 뒤 군 상부에 의해 은폐됐다는 의혹을 제기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다.”

진실밝혀 과거청산 매듭을

**의문사 규명
계속돼야 한다**

◎ 시한연장 당위성

운동권 학생에 대한 공안기관의 폭력적 공작이었던 이른바 '녹화사업'이 강도 높게 진행되던 1983년 강제로 징집된 사병 5명이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 죽음이 일정한 시기에 집중돼 있어 큰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0년 뒤 이 사건을 조사 중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개별 죽음의 배경만 설명할 수 있을 뿐, 의문의 전모에는 거의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군 정보기관이 거듭 자료제공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없다"는 것이 이유다. 최근에는 당시 녹화사업 실무 책임자로 자료제출을 요구받고 있던 전보안사 과장 서의남씨가 개인자료를 불태우고 잠적했다. 현직 검사 3명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고 있고, 위원회의 유일한 처벌수단인 과태료를 납부한 사람도 없다.

광복 이후 국가제도의 권능으로 과거의 죄악을 규명하고 청산

'은폐된 죄악' 후세에 넘기지 말아야
국가기관 비협조 막을 제도보완 절실

하려는 노력은 거듭된 시련에 부딪쳐 늘 좌절되었다. 그 시련은 그 시대의 정치발전 수준과 맞물려 있다. 오는 16일로 조사시한 만료를 앞두고 있는 의문사진상 규명위원회의 어려움도 그런 역사적 과정의 연장선에 놓여있다.

의문사위원회의 규명작업이 개별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 수준을 넘어 과거 청산과 연결될 수 있을지는 출범 당시부터 의문이었다. 70년대의 전향공작, 80년대의 강제징집과 녹화사업, 삼정교육대 등 여러 국가 기관들이 대거 참여해 같이 기획하고 실행했던 악의 구조적 실체에 겨우 접근하기 시작한 단계에서 위원회의 조사 기능은 이제 종말을 맞고 있다. 특히 삼정교육대 문제는 당시 사업의 기획과정, 군 부대 내부에서 벌어졌던 피교육생들의 집단저항 실상 등에 바짝 접근할 수 있었다. 조사시한이 연장된다면 이 부분은 많은 진전이 기대된다.

▶2면으로 이어짐
김훈 기자 hoon@hani.co.kr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여론 확산

"чин인공노할 국가범죄를 단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할 수 없다면 도대체 누가 국가와 법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국가 권리의 저지를 반인권적 범죄는 공소시효를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사회와 정치권에 확산되고 있

다.

이같은 주장은 국가 권력에 의해 저질리지고 은폐됐던 수지갑·최종길 교수·허원근 알병 사건 등의 실체가 속속 드러나면서 더욱 힘을 얻고 있다.

개다가 범죄를 저지른 집단이 국

가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기간에는 사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주

최한 '공소시효배제 입법토론회'에

서도 참석자들은 "사회정의를 확립

하는 차원에서 특별법을 제정해서라

도 국가기관의 범죄행위를 단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국가기관의 범죄에 공소시

효를 적용하는 것은 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소시효 제도의 취지

에 이곳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

다. 개다가 범죄를 저지른 집단이 국

가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기간에는 사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주

최한 '공소시효배제 입법토론회'에

서도 참석자들은 "사회정의를 확립

하는 차원에서 특별법을 제정해서라

도 국가기관의 범죄행위를 단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국가기관의 범죄에 공소시

효를 적용하는 것은 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소시효 제도의 취지

에 이곳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

다. 개다가 범죄를 저지른 집단이 국

가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기간에는 사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회간문과 의견서를 통해

"무고한 국민을 살해하고 사건 조작

과 은폐에 관여했던 범죄자들이 지금

까지 벗어나 공작에 남아 진실규명

작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제2, 제3의 범죄행위를 방지

하기 위해 국회는 반인도적 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93년

오스트리아에서 공포된 인권선언

실상 진실규명을 위한 수사가 불가능

하다고 강조한다.

국제적으로도 국가기관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한다

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국제연합(UN)은 지난 68년 마련

한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의 시

작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제2, 제3의 범죄행위를 방지

하기 위해 국회는 반인도적 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률을 즉각 제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회간문과 의견서를 통해

"무고한 국민을 살해하고 사건 조작

과 은폐에 관여했던 범죄자들이 지금

까지 벗어나 공작에 남아 진실규명

작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제2, 제3의 범죄행위를 방지

하기 위해 국회는 반인도적 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93년

오스트리아에서 공포된 인권선언

실상 진실규명을 위한 수사가 불가능

하다고 강조한다.

국제적으로도 국가기관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한다

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국제연합(UN)은 지난 68년 마련

한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의 시

작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제2, 제3의 범죄행위를 방지

하기 위해 국회는 반인도적 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률을 즉각 제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회간문과 의견서를 통해

"무고한 국민을 살해하고 사건 조작

과 은폐에 관여했던 범죄자들이 지금

까지 벗어나 공작에 남아 진실규명

작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제2, 제3의 범죄행위를 방지

하기 위해 국회는 반인도적 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률을 즉각 제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회간문과 의견서를 통해

"무고한 국민을 살해하고 사건 조작

과 은폐에 관여했던 범죄자들이 지금

까지 벗어나 공작에 남아 진실규명

작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제2, 제3의 범죄행위를 방지

하기 위해 국회는 반인도적 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률을 즉각 제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회간문과 의견서를 통해

"무고한 국민을 살해하고 사건 조작

과 은폐에 관여했던 범죄자들이 지금

까지 벗어나 공작에 남아 진실규명

작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제2, 제3의 범죄행위를 방지

하기 위해 국회는 반인도적 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률을 즉각 제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회간문과 의견서를 통해

"무고한 국민을 살해하고 사건 조작

과 은폐에 관여했던 범죄자들이 지금

까지 벗어나 공작에 남아 진실규명

작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제2, 제3의 범죄행위를 방지

하기 위해 국회는 반인도적 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률을 즉각 제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회간문과 의견서를 통해

"무고한 국민을 살해하고 사건 조작

과 은폐에 관여했던 범죄자들이 지금

까지 벗어나 공작에 남아 진실규명

작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제2, 제3의 범죄행위를 방지

하기 위해 국회는 반인도적 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률을 즉각 제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회간문과 의견서를 통해

"무고한 국민을 살해하고 사건 조작

과 은폐에 관여했던 범죄자들이 지금

까지 벗어나 공작에 남아 진실규명

작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제2, 제3의 범죄행위를 방지

하기 위해 국회는 반인도적 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률을 즉각 제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회간문과 의견서를 통해

"무고한 국민을 살해하고 사건 조작

과 은폐에 관여했던 범죄자들이 지금

까지 벗어나 공작에 남아 진실규명

작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제2, 제3의 범죄행위를 방지

하기 위해 국회는 반인도적 범죄의

의문사위 활동연장 법안 제출

한나라당 김원웅(金元雄) 민주당 김희선(金希宣) 자민련 송광호(宋光) 회의원 25명은 의문사진상규명위의 활동 기한을 연장하고 특별검사 것을 골자로 하는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을 10일 국회에 제출

개정안은 철저한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해 위원회 조사기간을 제한하며, 위원장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했는 이달 16일로 조사시한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위원회의 동행명령에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응하지 아니할 의 신청에 의해 법원의 구인장을 받아 구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원 강화했다.

〈연합〉

의문사규명위 활동연장 법안 제출

권한도 대폭 강화

김원웅(한나라당) 김희선(민주당) 송광호(자민련) 등 의원 25명은 오는 16일로 조사시한이 끝나는 의문사 진상규명위의 활동기한을 연장하고 그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의문사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을 10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철저한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해 위원회의 조사기간을 제한하지 않도록 했으며,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위원회의 동행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특별검사가 신청해 법원의 구인장을 받아 구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기한 연장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낙연 대변인은 “의문사진상위가 의미있는 실적을 내놓았으며, 현재 하고 있는 일도 있고, 앞으로 해야 할 일도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보협 기자 bhkim@hani.co.kr

의문사 진상규명과 한나라당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법정 활동 시한이 16일로 다가섰다. 진상규명위는 2000년 10월 발족한 이래 이른바 ‘권력기관’들의 비협조 속에서도 적잖은 성과를 거두었다.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에서 조사받다 숨진 서울대 법대 최종길 교수와 1997년 숨진 한총련 투쟁 국장 김준배씨가 각각 고문과 폭행으로 살해당했다는 조사 결과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더구나 허원근 알병이 타살된 뒤 군 상부에 의해 은폐됐다는 진상규명위의 ‘최종 결론’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의문사가 많거니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만 하더라도 41건에 이른다. 얼마든지 밝혀질 수 있는 의문사의 진실이, 권력기관의 거부와 활동시한에 묶여 다시 덮인다면 이는 의문의 죽음을 다시 ‘살해’하는 행위다. 진실규명에 온몸을 던져온 의문사 유가족들과 시민사회 단체들이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선 까닭

이 여기 있다.

문제는 국회다. 법 개정이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임에도 국회가 모르쇠하거나 우물쭈물하는 모습은 납득할 수 없다. 그동안 한나라당 김원웅 의원과 민주당 이창복 의원이 활동 시한 폐지와 조사권한 강화를 뼈대로 하는 의문사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했지만 당 차원의 무게가 실리지는 못했다. 늦었지만 민주당이 10일 법 개정을 당론으로 정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따라서 이제 공은 한나라당으로 넘어갔다. 원내 과반의석을 갖고 있는 한나라당이 뜻만 있다면 언제든지 개정이 가능한 상황이다. 한나라당이 조사기한 연장과 규명위의 권한강화에 선뜻 나서지 않는 이유는, 과거 의문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사들이 몸 담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런 해석이 ‘오해’임을 입증할 방법은 간단하다. 즉각 법 개정에 나서는 것이다.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작업에 한나라당도 기꺼이 동참하기를 바란다.

2002. 9. 11

의문사委 활동 연장법안 제출

권한 대폭강화…특검제 도입도 추가

한나라당 김원웅(金元雄)·민주당 김희선(金希宣)·자민련 송광호(宋光浩) 의원 등 국회의원 25명은 10일 의문사진상규명위 활동시한을 연장하고 특검제 도입을 추가하는 내용의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의문사 진상규명의 완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조사기간을 대폭 강화했다.

제한하지 않고, 위원장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특별법은 오는 16일로 조사시한을 마치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또 위원회의 동행명령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할 경우 특별검사 신청에 의해 법원의 구인장을 받아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권을

민주당은 의문사위 활동기한 연장을 공식 추진키로 했다.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은 고위당직자회의 후 “의문사위가 기한 연장을 바라고 여론도 지적하고 있다”며 “더욱이 의미있는 실적을 내놓고 있고, 하고 있는 일도 있으며, 해야 할 일도 있기 때문”이라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기수기자
kslee@kyunghyang.com

기획부 기자단

국회 법사위(위원장 함석재)는 11

일 전체회의를 열어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심사했으나,

지난 7일과 10일 각각 국회에 제출

2002. 9. 12

의문사규명 연장 무산위기

의원들 무관심…법사위, 법 개정안 상정조차 안해

오는 16일로 끝나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한을 연장하는 것 등을 빠대로 하는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됐으나,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가 이를 아직 안건으로 올리지도 않아 법안 심의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국회 법사위(위원장 함석재)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심사했으나,

지난 7일과 10일 각각 국회에 제출

된 2건의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은 안건으로 다루지 않았다. 법사위 관계자는 “국회법상 상임위에 회부된 법안은 5일이 지나야 심사할 수 있는데, 두 법안은 9월과 11월에야 법사위에 회부된 상태”라며 “법안이 너무 늦게 제출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법은 ‘특별한 사유로 상임위의 의결이 있을 경우 법안을 앞당겨 심사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 법사위원들이 마음먹

기에 따라서는 조속한 심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사위 관계자는 “아직 의원들 사이에 예외를 적용하려는 움직임은 없다”고 말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 예산안을 처리한 뒤 국정감사를 위해 14일부터 22일 동안 본회의를 열지 않을 예정이어서,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이 13일까지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의미를 잃게 된다.

박용현 기자 piao@hani.co.kr

2002. 9. 11

역사의 진실캐기 멈출 수 없다

어두운 과거 속에 묻혔던 억울한 죽음들의 진실을 캐내기 위해 만들어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오는 16일을 끝으로 그 활동을 접게 된다. 우리의 현대사가 일제제국 이후 한번도 '역사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의문사진상위의 활동은 나름대로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여러 가지 법적·제도적 미비점에도 불구하고 2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 85건의 사건을 접수받아 35건을 처리했다. 때문에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의문사진상위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의문사진상위가 나머지 미결사건을 매듭짓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의문사진상위는 그동안 서울법대 최종길 교수,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으로 보안사에서 조사받다 숨진 임기윤 목사 등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냈다. 10일에도 1984년 육군 7사단에서 숨진 하원근 일병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듯이 의문사진상위는 국가기관이 저지르

고 은폐해 온 진실을 찾아내 왔다.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 또는 안전기획부, 검찰, 경찰, 군 등 ‘힘 있는 권력기관’이 관련돼 있는 뒷에 조사 자체도 어려웠지만, 진실이 밝혀진다 해도 억울한 죽음에 대한 정당한 보상도 제도적으로 불가능했다. 따라서 의문사진상위의 조사기한을 연장하는 것과 동시에 특별검사에 준하는 권한도 부여하고 적절한 보상을 하기 위한 법개정도 추진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이 10일 의문사진상위의 활동기한 연장을 추진키로 했다는 것은 반기운 소식이다. 한나라당도 이에 동참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의문사진상위의 활동을 연장, 미결사건의 처리를 끝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정치권은 독재정권 시절에 국가기관에 의해 저질러졌던 반민주적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2002. 9. 12

공소시효 배제 검토해야

13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최근 “반인권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부끄러운 역사를 되풀이 할 수 없”며 공소시효배제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하원근 일병 사망사건 등 국가권력이 저지른 반인권범죄의 실상이 날날이 드러나고 있다며 그런데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책임자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활동이 오는 16일이면 끝나게 된다. 위원회 자체는 다음해 3월까지 존속 하지만 위원회의 존재이유인 의문사 진상규명 활동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된다.

의문사위는 국가 공권력이 부당하게 개입해 죽음에까지 이르게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에 대해 그 진상을 밝히는 임무를 맡고 있다. 불의한 독재정권의 탄압에 저항하다가 공권력에 의해 살해되는 일은 문명사회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런 데 그런 끔직한 일이 이 땅 위에서 벌어졌었다. 따라서 의문사위는 그 진상이 무엇인지 반드시 규명해 기록으로 남기

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것이 살아 남은 사람들에게 지워진 책무이기도 하다. 이런 일을 시간의 제약으로 인해 더 이상 할 수 없다면 그것은 말도 안된다.

광복 직후 반민특위가 좌절돼 과거청산에 실패한 쓰라린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을 중단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기간 연장 뿐만 아니라 의문사위의 권한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압수수색권과 강제구인권, 계좌추적권 등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지 않고서는 제대로 활동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의문사위가 이런 권한을 갖지 못하다보니 사건 핵심 관계자가 버젓이 증거소각 사진을 위원회에 보내고 잠적해 버린 일도 있었다고 한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 우리는 의문사위 활동 기간연장은 물론, 그 권한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참고인에 대한 통화내역 감청, 출국금지, 특별검사제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권, 의문사규명 묵살하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추적해 온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최근 인혁당 사건, 허원근 일병 사건 등 분석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했음에도, 정치권과 청와대의 무관심 속에 활동 시한(16일)을 연장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특히 국회에서 활동시한 연장 등을 빼대로 하는 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각 정당과 법사위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등 정치권 전반이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12일 처리가 시급한 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을 전날에 이어 또다시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법사위에서 민주당 합승희 의원이 법안 심의를 제안했으나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 등은 “시효가 끝났으면 활동을 끝내야 한다”며 반대했다.

이에 따라 의문사진상규명이 활동시한을 연장하려면 1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 전에 법사위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한 뒤 곧바로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길밖에 남지 않았다.

정근환 민주당 원내총무는 이와 관련해 “13일 법사위와 본회의를 엎 달아 열어 해당 법안을 처리하자고, 이규택 한나라당 총무에게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총무는 “아직 까지 이 문제를 당내에서 논의한 바 없다”며 “13일 오전 당직자 회의에서 검토한 뒤 당론을 결정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만 밝혀 법안 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이처럼 법사위의 인건 상정이 늦어진 데 대해 정 총무는 “당과 소속 의원들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법사위, 연장법안 처리 뒷짐
청와대도 “국회가 할일”방관

“탓”이라고 말했다. 이 총무도 “전임 당직자들로부터 이와 관련한 인수인계를 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고위당직자 회의를 통해 의문사진상규명위 활동시한 연장을 추진한다는 당론을 정해 놓고도 이팔다리를 허속 작업을 하지 않다가 막판에야 한나라당에 개정안 합의 처리를 제안했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주요당직자회의 등 당론 결정기구에서 의문사진상규명위 활동시한 연장 문제를 전혀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문사진상규명위가 대통령 직속 기구인데도 청와대 역시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애초 진상규명위는 의원입법을 통해 만들어진 기구”라며 “해당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국회 논의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창식 박용현 기자 cspcsp@hani.co.kr

오늘부터 5차 이산상봉

제5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참여할 남측 상봉단 587명이 13일

오전 11시 강원 속초항에서 금강산 관광선 설봉호선으로 금강산으로 떠난다. 남쪽 상봉단은 북한 이산가족 100명을 만날 가족·친척 457명과 지원요원 100명, 취재진 29명 등이다. 이산가족들은 13일부터 15일까지 △첫날 단체상봉(2시간)과 만찬(2시간) △둘쨋날 개별상봉(2시간)과 공동증식(2시간), 합관상봉(3시간) △마지막날 작별상봉(1시간) 등 모두 6차례 12시간 동안 북측 가족을 만나게 된다.

이처럼 법사위의 인건 상정이 늦어진 데 대해 정 총무는 “당과 소속 의원

들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정녕 유가족마저…

김용민의 그림마당
yongmin@kyunghyang.com



2002. 9. 13

‘억울한 죽음’ 진실캐기 계속돼야

“감추어진 것은 밝혀지고 비밀은 세상에 알려지게 마련이다.” 서울 종로구 수송동 이마빌딩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내걸린 성경 구절을 바라보는 조사관들의 얼굴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출발이후 억울한 죽음의 규명과 의문사한 사람들의 명예회복 등을 위해 노력했지만 태생적 한계로

16일 법적활동 마감… 85건 중 32건 마무리

최종길 사건등 ‘戰果’… 전체적 성과는 미미
법적권한 미약-해당기관 비협조 등 한계점

수사 중인 것은 정경식 사건 등 12건이다. 그러나 장준하, 이내장, 박정수 사건 등 이른바 ‘의문사 비5’ 가운데 최종길 사건 만이 종결됐을 뿐 18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비협조 등으로 1차보고 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의문사위 성과= 지난해 1월 이후 총 의문사 85건을 접수한 의문사위는 이 가 운데 12일 현재 32건 (38%)를 마무리지었다. 그동안 최종길, 김준배 사건 등 베일에 싸여 있던 사건의 진상을 밝힐 것을 목표로 했다. 특히 최종길 김준배 박영무 사건 등 8건은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위법한 공권력 행사과정에서 사망한 것으로 인정받았는데 의문사위의 조사결과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1973년 유럽 거점 간첩단 사건으로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받아 숨진 최종길 전 서울대 교수와 97년 한총련 투쟁국장으로 경찰에 죽기 다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진 김준배 사건은 의문사위가 당초 조사

결과를 뒤집고 사건의 전모를 밝혀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지난달 중간발표에서 군 당국의 자살설문은 18년만에 뒤집은 하원군 일병 사건도 군 의문사에 대한 일반의 인식을 새롭게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53건 가운데 결과 보고가 끝난 것은 최석기, 박용서 사건 등 23건, 보강



△ 하원군 일병 의문사 사건과 관련, 지난 3일 강원도 횡성군 군부대를 찾은 의문사위 조사위원들이 당시 사체가 발견된 유류창고 앞에서 상황을 재연해 보이고 있다. /화천=한국

임초로 작용했다. 특히 수사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민관조사관 57명이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년이 지난 의문사를 2년도 채 안되는 기간 중 밝혀낸다는 것 자체가 무리였다는 지적이다.

의문사위 인정된 사건에 대한 보상을 담당하는 민주화운동보상 실의위원회의 ‘권한분쟁’을 끝내 해결하지 못해 의문사한 것으로 인정된 이를 중 어느 누구도 아직까지 적법한 보상을 받지 못한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황현택기자 larchide@sgt.co.kr

2002. 9. 13

의문사위 기한 연장할듯

한나라·민주 “긍정검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16일로 끝나는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한의 연장을 긍정 검토하기로 합의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문사 진상규명특별법의 개정을 통한 의문사위의 활동 연장 가능성이 커졌다.

한나라당 서청원(徐清源) 대표는 12일 평화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의문사위의 활동으로 그 동안 여러 가지 진실이 밝혀졌다”며 “필요

하다면 시한 연장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10일 고위당직자회의에서 “의문사위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고, 해야 할 일도 있다”며 기한 연장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국회가 16일부터 상임위원회로 일제히 국정감사에 돌입, 법안 심의 및 본회의 소집이 쉽지 않아 한동안 의문사위의 활동 중단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성숙기자
feelchoi@hk.co.kr

한국일보

2002. 9. 13

내일신문

의문사진상규명 중단위기

‘시한연장법’ 처리 못해 … 한나라당 소극적 태도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고 장준하씨와 하원근 일병의 의문사가 타살이라는 사실을 밝혀내는 등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의문의 죽음에 대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이 성과를 보이고 있음에도, 진상규명 작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 법적 조사기간이 오는 16일로 끝남에도 불구하고 이를 연장하는 법 개정안이 다소 늦게 발의된 데다가 정치권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보고된 것은 12일, 활동정지 시한을 불과 나흘 앞두고였다. 두개의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각각 7일과 10일이었고, 법사위에 회부된 것은 9일과 11일이었다. 처리 시한이 너무 촉박하게 제기된 것이다.

그럼에도 의원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이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12일 열린 법사위

위에서 민주당 간사인 함승희 의원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시한연장 법안의 처리가 시급하다”고 제안하자, 한나라당 간사인 김용균 의원은 “시한법이란 약속한 시한이 끝나면 활동을 종료해야 하는 것”이라며 법안 처리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결국 이날 회의는 논란을 벌이다가 처리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끝났다.

또 12일 저녁 총무간 전화 접촉에

서도 민주당 정교환 총무가 “시급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한나라당 이규택 총무는 “법사위에서 기본적으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13일 당직자회의에서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13일 법사위가 새로 소집돼 처리된 후 본 회의를 통과하지 않는 이상, 국정감사가 끝나는 10월초까지 진상규명 작업의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법사위 조순형 의원은 “시한을 연장하는 내용이야 바로 처리할 수 있지만, 권한 강화문제는 법무부와 협의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 이를 사이에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며 “16일 활동시한이 끝나는 것은 다 알고 있었는데 미리 서두르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말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유한범 흥보팀장은 “위원회 인력의 3분2가 조사인력인데 조사활동이 중단되면 사실상 활동이 정지되는 것”이라며 “시간과 권한 부족으로 밝혀내지 못한 의문사가 많아 아쉽다”고 입장을 밝혔다.

의문사 유가족협의회 허영춘 지회장은 “국가에서 잘못해 벌어진 일을 규명하는 작업인데, 이를 철저히 밝혀내지 않으면 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죽음이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다”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을 중단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함승희 의원은 “법무부와 신속한 협의를 위해 담당자를 국회에서 대기토록 요청했다”며 “한나라당이 응하기만 하면 13일 중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말해 전격 처리될 가능성이 배제하지 않았다.

의문사진상규명위 연장 끝내 무산

국회, 법개정안 방치

국회에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시한 연장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외면함으로써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는 2년여의 활동을 사실상 마감하게 됐다.

▶관련기사 3면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200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처리했으나, 의원발의로 제출된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이날까지도 법사위 심사를 거치지 못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국회는 국정감사 때문에 14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할 예정이어서, 개정안 처리 여부와 상관없이 규명위의 조사활동은 현행 법률에 따라 16일로 끝나게 됐다.

이에 따라 관련 법을 새로 제정하거나, 미제 사건에 대한 재수사 조항

을 넣은 새로운 개정안을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극적으로 마련하지 않는 한, 규명위는 내년 3월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는 관련조사 보고서 작성을 제외한 모든 활동을 중단하게 된다.

각 당은 이날도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함승희 의원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오늘 법사위를 열어 시한연장 개정안을 처리해야 하지만, 한나라당이 반대해 사실상 무산됐다”며 책임을 한나라당에 떠넘겼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대변인 보

리핑을 통해 “관련법 개정에 대한 당의 방침을 의원총회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혔으나, 정작 의총장에서는 서정원 대표만이 “아직 법사위의 논의가 끝나지 않았으므로 당 지도부에 맡겨달라”고 밝히는 데 그쳤다.

의문사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년 10월 공식 출범한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지금까지 85건의 의문사 사건을 접수해 이 가운데 박영두·최종길·김준배·허원근씨 등의 의문사 사건과 80년대 군 녹화사업 등 30여건의 진상을 밝혀냈다.

인수찬 기자 ahn@hani.co.kr

한교협, 시한연장 촉구

한국기독교교협의회는 13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활동 시한을 연장해줄 것을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했다.

협의회는 “아직도 39건을 조사 중에 있는 상황에서 의문사위가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야가 초당적 차원에서 기간 연장과 조사권한 강화를 뼈대로 하는 법률 개정에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의문사위 시한연장 범국민운동 벌일것”

유가족·사회단체 법개정 다각투쟁 계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시한연장 법개정이 일단 무산됐으나, 유가족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법개정 부진을 계속해 나갈 움직임을 보이는 등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않고 있다.

유가족들은 개정법안의 9월 처리와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이지만, 국정감사가 끝나는 10월에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유가족들은 특히 다음달에 열릴 국회 법사위에 이창복(민주당)·김원웅(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의문사규명에 관련법 개정안이 심사돼, 10월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방안을 기대하고 있다.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국민연대 이은경 사무처장은 “의문사위원회는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해 내년 3월16일 까지 위원장과 상임위원의 임기가 계속된다”며 “행정절차를 통해 이 기간 안에 언제든지 조사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안처리에 소극적인 한나라당도 서정원 대표가 지난 12일 라디오에 출연해 “위원회 활동으로 여러 가지 진실이 밝혀졌다”며 “시한연장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언급해 대외적으로는 시한연장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간사인 김용균 의원은 12일 법사위 회의에서 “시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느냐. 밝혀진 것은 밝혀진 대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검찰에 넘기면 된다”며 사실상 시한연장

한겨레 그림판

jang@hani.co.kr 장봉근

계속되는 이학당사건



이 되지 않으면, 그 책임이 한나라당에 있다고 보고 이희창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까지 벌이는 방안까지 계획하고 있다.

유족과 사회단체들은 17~18일 이를 동안 ‘의문사진상규명 법 개정 촉구 1인 시위’를 국회 앞과 한나라당, 민주당사 앞에서 열고, 이에 앞서 위원회 조사활동이 끝나는 16일에는 ‘의문사 조사증명 항의 및 법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 방침이다. 사회단체들은 특히 이번 획기 안에 법개정

안수찬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의문사委 시한연장 무산

법개정안 본회의 상정 못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시한 연장을 위한 국회의 관련법 개정이 끝내 무산됐다. 이에 따라 진상규명위는 오는 16일로 2년여의 활동을 사실상 마감하게 됐다.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었으나 의원발의로 제출된 의문사진상규명위 특별법 개정안이 이날까지 법사위 심사를 거치지 않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국회는 국정감사 실시를 위해 14일부터 다

음달 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할 예정이어서 개정안 처리 여부와 상관 없이 규명위의 조사활동은 현행법률에 따라 종료하게 됐다.

이에 따라 관련법을 새로 제정하거나 미제(未濟) 사건에 대한 재수사 조항을 넣은 새로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 한 규명위는 내년 3월까지 제출도록 돼있는 관련조사보고서 작성을 제외한 모든 활동을 중단하게 된다. 규명위는 2000년 10월 17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출범했다. 서승욱 기자

<sswook@joongang.co.kr>

의문사委 활동연장 사실상 무산

한나라·민주 異見에 개정안 상정 못해

16일로 조사 활동시한이 종료되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활동시한 연장이 사실상 무산됐다. ▶A29면에 관련기사

위원회의 시한연장을 위한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의견으로 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데다 위원회 활동 시한까지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 않아 시한 내 연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측은 시한연장을 위해 이 날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를 열어 개정안을 심의한 뒤 본회의에서

추경안과 함께 처리하자고 제안했으나 한나라당이 응하지 않아 상임위가 열리지 못했다.

이승현기자 ddr@donga.com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내년3월로 도입 연기

교원단체와 교원노조가 거세게 반발해 왔던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의 본격적인 시행 시기가 내년 3월로 연기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0월 말 시행 할 예정이었던 교육행정 정보시스-

템의 27개 영역 중 교원들의 주업무인 교무 학사 부분은 내년 2월 까지 시범 운영한 뒤 3월부터 본격 운영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범운영 학교에서는 올 2학기 중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을 적용하고 시범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는 종전의 학교종합 정보시스템으로 학사업무를 처리하면 된다.

한국교총과 전교조는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은 프로그램의 불안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 교원의 불만이 많았다"며 "정보 유출, 프로그램 오류 등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전문 전선인력 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

시한 앞둔 의문사委 “39건 진상규명 불능”

‘억울한 죽음’ 역사에 묻히나

권한 제한·관계기관 비협조 조사 난관 장준하·이철규 사건등 ‘영구미제’ 직면 “특별법 정비 기간 연장해야” 여론 비등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가 활동시한을 불과 사흘 앞둔 13일 사실상 마지막 조사 결과 발표인 이철규·박창수씨 사건에 대한 브리핑을 전격 취소했다. 이에 따라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술한 의문사들이 진상규명에 실패한 채 ‘영구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 관련기사 3·19면

특히 이날 이철규·박창수 사건에 대한 의문사위의 브리핑이 취소되고 사실상 ‘진상규명 불능’으로 처리되자 유족들과 관련 시민단체들은 크게 반발하며 조사활동기간 연장과 조사관 강화를 위한 법 개정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의문사위는 “이철규씨(1989년 의문사)와 박창수씨(91년 의문사)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이날 발표하려 했지만 조사내용이 너무 불충분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브리핑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김준곤 상임위원은 “타살의혹 가능

성을 입증할 만한 새로운 사실도 찾아냈지만 이를 확정지을 수가 없었다”면서 “그간의 의혹이라도 재점검하는 수준에서 조사 결과를 밝히려 했지만 활동이 끝나는 시점에서 브리핑하는 것 이 적절치 않다는 내부 의견으로 취소했다”고 밝혔다. 김상임위원은 “이는 조사기간의 부족과 권한의 미약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의문사위는 이철규씨 사건 조사에서 당시 안기부가 모종의 간첩단 사건 배후를 잡기 위해 이씨를 조사하려 했다는 안기부 직원의 진술을 염이낸 데다 일본 법의학자로부터 타살혐의가 짚다는 소견을 확보했으나 결정적인 증거

나 증인을 확보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문사위 관계자는 “두 사건에 안기부가 개입됐다는 진술 등을 확보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실체를 파악할 수 없어 관련기관에 자료와 담당수사관 인적사항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2000년 10월 17일 대통령 직속 국가기관으로 출범한 의문사위의 공식적 조사는 사실상 끝나게 됐다. 결국 그동안 의문사위가 접수한 83건 중 최종 결정이 내려진 사건은 44건으로 장준하·이철규·박창수 사건 등을 포함한 나머지 39건은 조사도 제대로 끝내

지 못한 채 다시 역사의 미궁 속에 빠지게 됐다. 최종 결정된 44건 중 의문사 인정은 11건, 기각 21건, 진상규명 불능 11건, 진정취하 1건이다. 의문사위의 활동시한까지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 않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기한 연장은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의문사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부분의 사건에서 증거와 참고인 진술을 통해 진상규명의 실마리를 찾았으나 조사대상기관인 국가정보원, 기무사 등 권력기관의 비협조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한계만 느낀 채 종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상임위원은 또 “의문사 사건 원인과 배경, 개입징후가 보이는 기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한 특별법의 정비 및 조사여건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 정비는 권한강화와 기간연장이 핵심이다”라고 말했다.

안홍목기자 ahn@kyunghyang.com

의문사委 조사활동 시한연장

정치권 '소극' 사실상 무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16일로 활동 중단 위기에 처하고 있으나 정치권의 입장 차이로 조사활동 시한 연장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역사 바로세우기 작업이 정치권의 인식부족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의문사위에 대한 각 당 입장=위원회는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을 근거로 2000년 10월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돼 83건의 사건을 접수했다. 이중 44건에 대한 최종 결과를 발표, 11건을 의문사로 인정했다.

위원회는 내년 3월까지 존속하지만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16일 이후 조

사활동이 중단되면 사실상 기능은 정지 된다.

이에 민주당은 시

한 연장을 적극 주장

하고 나섰다. 13일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국회 법사위 간사이인 함승희(咸承熙) 의원은 "한나라당의 반대로 16일까지 국회 본회의 일정이 안잡히는 바람에 시한 연장은 사실상 무산됐다"고 보고했다. 한화갑(韓和甲) 대표는 "활동시한을 꼭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나라당이 이를 반대하면 의문사를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굳이 연장할 필요가 있느냐"는 태도이지만, 일부 의원들은 시한 연장에 찬성하고 있다.

당 확대선거전략회의에서 이규택(李揆澤) 총무는 "민주당 정균환(鄭均桓) 총무에게 '시한 연장문제는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알아서 할 일'이

라고 했다"고 보고했다. 법사위 간사이인 김용균(金容鈞) 의원도 "의문사진상 규명특별법은 당초 한시법으로, 특검 법 같은 것도 과제가 남으면 검찰로 보내다"며 시한 연장에는 부정적 태도였다. 반면 김원웅(金元雄) 의원 등 소장파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 조사활동을 연장해야 한다"며 개정안 처리를 요구했다.

◇ 전망=16일까지 국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돼야 하지만 각 당의 의견으로 통과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소극적인 데다 민주당도 이 문제에만

집착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물론 극적 타결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한나라당 서정원(徐清源) 대표는 12일 한 라디오방송에서

"위원회 활동으로 그간 여러가지 진실이 밝혀졌다. 필요하다면 시한 연장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규택 총무도 "필요하면 논의를 거쳐 새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시한 연장을 당론으로 정해놓고 있다.

특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한 민주당 이창복(李昌復) 의원과 한나라당 김원웅 의원은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

이의원은 "이처럼 중요한 문제는 양당이 협의해 16일까지 새 의사일정을 잡아 처리하면 된다"며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새로 발족하는 내용의 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최우규·손승욱기자

의문사委 활동연장 사실상 무산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 안돼.. 비판여론 거셀듯

오는 16일로 활동시한이 종료되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시한 연장이 사실상 무산됐다.

위원회의 시한연장을 위한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이 한나라당과 민주당간 이견과 정부측의 무성의로 13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데다, 위원회 활동시한까지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있지 않아 시한내 연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측은 시한연장을 위해 13일 중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를 열어 개정안을 심의한 뒤 이날 본회의에서 추경안과 함께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으나 한나라당측이 소극적 태도를 보여 상임위가 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국회가 위원회 활동 보장을 통해 과거 민주화 투쟁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억울한 죽음의 진상

을 규명하는 등 인권을 보호하는데 소홀했다는 비판여론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진상규명위 등 행정부도 개정안을 시한종료가 임박한 지난 7월과 10월에 야 각각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활동시한 연장 의지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맹경환기자

의문사진상위 시한연장 무산위기

국회본회의·법사위 예정없어… 개정안 심의 못해

오는 16일로 활동시한이 종료되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시한연장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13일 정치권은 정부측의 무성의를 지적하는 등 책임 공방을 벌였다.

진상위 시한연장을 위한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가 열려야 하지만 16일 까지 예정된 본회의가 없고, 이에 앞서 해당 상임위인 법사위의 법안 심의조차 마무리될 가능성이 희박해 위원회는 사실상 활동을 접게 될 공산이 크다. 법사위 한나라당 간사인 김용균(金容鉉) 의원은 이날 "현재로선 물리적으로 법사위를 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시한연장 개정안이 뒤늦게 국회에 제출된 데 따른 정부측 무성의를 지적하면서 한나라당이 시한연장에 반대해왔다고 비난했으며, 한나라당은 개정안 제출이 늦어진

탓에 물리적으로 심의가 불가능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진상규명위는 시한연장을 위한 2개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면서 뒤늦게 지난 7일과 10일에서야 제출하는 등 당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 이지운기자 jj@kdaily.com

社 說

의문사법 제대로 개정하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시한을 없애고 권한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데도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의문사위의 활동은 법이 고쳐지지 않는 한 16일로 종료될 수밖에 없어 이제부터는 조사를 중단하고 내년 3월까지 제출하게 돼 있는 보고서 작성만 해야 할 판이다.

그런데 의원 발의로 국회에 제출돼 있는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아직도 법사위 심사를 거치지 못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국정감사 때문에 국회 본회의는 10월 5일까지 열리지 않는다. 따라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개정안에 합의를 한다 해도 본회의 처리시기는 10월 중순 이후나 될 전망이다. 정치권의 행태로 볼 때 그 시기는 더 늦어질 수도 있다. 의문사위가 다루는 사건들은 하나같이 민감하고 진실을 밝혀내기 어려운 것들이어서

조사가 중단될 경우 진실 규명은 더 어려워진다. 문제는 두 당이 모두 법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법개정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의문사위의 활동시한이 다가오는 것을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두 당은 개정절차를 밟지 않았다. 9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앞두고 싸움만 하고 있는 정당의 입장에서는 의문사 진상규명이 표와는 관계가 없고, 하찮은 일일지 모른다. 특히 원내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무성의한 태도는 많은 사람들을 실망케 하고 있다. 13일의 법사위 처리에 반대하고 의원총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기로 했다가 다시 당 지도부에 맡기기로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제출된 법안의 핵심은 조사시한을 못박지 않는다는 것이지만, 권한 강화가 없는 시한 연장은 큰 의미가 없다. 기왕 개정절차가 늦어진 바에는 권한 강화를 포함한, 제대로 된 개정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